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019. 1.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목 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 시행령 별표.....	143
• 시행규칙 별표.....	153
• 시행규칙 별지 서식.....	169

부 록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213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223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237
•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24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목 차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3	제1조(목적)..... 13	제1조(목적)..... 13
제2조(정의)..... 13	제2조(정의)..... 13	제2조 삭제 <2016. 8. 4.>
	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15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15	
제3조(적용범위)..... 18		
제4조(국가의 책무)..... 19		
제5조(사업자의 책무)..... 20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21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23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23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24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24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26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26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29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40 제12조(변경등록 · 변경신고 등)…………… 46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5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8조 삭제 <2018. 12. 24.> 제9조 삭제 <2018. 12. 24.>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29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30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31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40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52</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9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35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36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38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40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외의 변경신청 등)……… 43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45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46 제10조(변경등록 사유)…………… 47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49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50</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53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53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53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53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54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55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56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56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57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57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57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58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61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63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63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63
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64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64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66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66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66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66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67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67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6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71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68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71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72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72
제19조(유해성평가 등)..... 76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76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74
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78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74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78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76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78	제17조(연구기관)..... 78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77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81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78
제24조(위해성평가)..... 83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83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78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80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81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81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83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86</p> <p>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89</p> <p>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90</p> <p>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91</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92</p> <p>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95</p> <p>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98</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86</p> <p>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90</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92</p>	<p>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85</p> <p>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85</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92</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94</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95</p> <p>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95</p> <p>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97</p> <p>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9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105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106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106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107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108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108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108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109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109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110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111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111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111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112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112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113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113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114		제52조(출입·검사)..... 114
		제53조(검사기관)..... 116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117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117
제45조(자료의 보호)..... 118	제30조(자료의 보호)..... 118	제5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118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6조(수수료)····· 119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119
제47조(청문)····· 120		제56조(수수료)····· 119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120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20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8		
제8장 벌 칙	제8장 벌 칙	제8장 벌 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벌칙)····· 128		
제51조(벌칙)····· 129		
제52조(벌칙)····· 130		
제53조(양벌규정)····· 131		
제54조(과태료)····· 132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132	
부칙····· 134	부칙····· 134	부칙····· 13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법률 제15844호, 2018. 10. 16., 일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p>[대통령령 제29413호, 2018. 12. 24., 일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 <2018. 12. 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p>[환경부령 제790호, 2018. 12. 28., 일부개정]</p> <p>제1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삭제 <2016. 8. 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p> <p>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p> <p>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p> <p>5. 삭제 <2018. 3. 20.></p> <p>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7. "허가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p>	<p>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p> <p>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p> <p>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p> <p>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p> <p>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p> <p>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p> <p>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p> <p>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p>	<p>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p> <p>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p> <p>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p> <p>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p> <p>제3조(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p> <p>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p> <p>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p> <p>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p> <p>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p> <p>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p> <p>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p> <p>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p>	<p>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p> <p>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p> <p>16. 삭제 <2018. 3. 20.></p> <p>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p> <p>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p> <p>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p> <p>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p> <p>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p> <p>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p> <p>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p> <p>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p> <p>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p> <p>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는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 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3. 20.> 	<p>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p>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p> <p>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p> <p>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6. 8. 2.]</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6. 8. 2.]</p> <p>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8. 12. 24.></p> <p>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위해성평가위원회2. 정보제공심의위원회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p>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4.></p> <p>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p>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p>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8조 삭제 <2018. 3. 20.></p> <p>제9조 삭제 <2018. 3. 20.></p> <p>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p> <p>제8조 삭제 <2018. 12. 24.></p> <p>제9조 삭제 <2018. 12. 24.></p> <p>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p>[전문개정 2018. 12.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p> <p>제3조 삭제 <2018. 12. 28.></p> <p>제4조 삭제 <2018. 12. 28.></p> <p>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 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p> <p>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p> <p>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p> <p>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p> <p>가. 1톤 이상 10톤 미만</p> <p>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p> <p>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p> <p>라. 1천톤 이상</p> <p>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변경된 경우</p> <p>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p> <p>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p> <p>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p> <p>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p> <p>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p> <p>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p> <p>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화학물질의 명칭</p> <p>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p> <p>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p> <p>4. 화학물질의 용도</p> <p>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p>	<p>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p> <p>1.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톤</p> <p>2.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 10톤</p> <p>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증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증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p> <p>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p> <p>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p>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p> <p>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⑦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p>9.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p> <p>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목개정 2018. 3. 20.]</p>		<p>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p> <p>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p> <p>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3. 영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p> <p>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p> <p>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p> <p>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p> <p>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p> <p>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p> <p>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p>

변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p>	<p>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p>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p> <p>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p> <p>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되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p> <p>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p> <p>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p> <p>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p>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p> <p>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p> <p>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p> <p>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p> <p>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 화합물</p> <p>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p>	<p>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p> <p>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p> <p>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p>[제목개정 2018. 3. 20.]</p>	<p>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p> <p>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p> <p>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p> <p>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p> <p>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p> <p>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p> <p>7. 비분리중간체</p>	<p>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p> <p>④ 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p>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p>

변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p>가. 유해화학물질</p>	<p>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p>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목개정 2018. 12. 28.]</p> <p>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인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 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변률	시행령	시행규칙
	<p>나. 중점관리물질</p> <p>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p> <p>[제목개정 2018. 12. 24.]</p>	<p>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p> <p>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p>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p>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p>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4. 삭제 <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 <2018. 12. 28.> <p>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8.> 2. 삭제 <2018. 12. 28.> <p>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p>

번호	시행령	시행규칙
		<p>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2.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p> <p>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p> <p>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p>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전문개정 2018. 1. 15.]</p> <p>[제목개정 2018. 12. 28.]</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 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

표준	시행령	시행규칙
		<p>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이 조에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p>	<p>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삭제 <2018. 12. 24.>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p> <p>[전문개정 2018. 3. 20.]</p> <p>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p>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p>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p> <p>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p> <p>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3. 화학물질의 용도</p> <p>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p> <p>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p> <p>6. 화학물질의 유해성</p> <p>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p> <p>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p> <p>9.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p> <p>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p>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p> <p>나.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자</p> <p>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 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p> <p>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p> <p>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화 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p>	<p>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④ 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p> <p>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p>	<p>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p>	<p>1. 시험자료의 명칭</p> <p>2. 삭제 <2018. 1. 15.></p> <p>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p> <p>4. 시험의 구체적 방법</p> <p>5. 예상 시험 일정</p> <p>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p> <p>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시험조건 또는 방법</p> <p>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p> <p>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p> <p>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p>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목개정 2018. 3. 20.]</p> <p>[시행일:2015. 1. 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7. 1. 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p>	<p>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p>	<p>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8. 1. 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9. 1. 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20. 1. 1.] 제14조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p> <p>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p>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p>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p> <p>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p> <p>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목개정 2018. 3. 20.]</p>	<p>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 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p> <p>[제목개정 2018. 12. 24.]</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p>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 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들은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

제품	시행령	시행규칙
		<p>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p> <p>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 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p>④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p> <p>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p>⑥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5., 2018. 12. 28.></p>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p>⑦ 제5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⑨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p> <p>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국립환경과</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학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되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제16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본조신설 2018. 4. 17.]</p>	<p>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p> <p>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p> <p>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p> <p>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5. 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p> <p>[본조신설 2018. 12. 2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p> <p>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4. 17.></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p>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p>[제목개정 2018. 12. 24.]</p>	<p>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4. 17.></p> <p>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7.></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p>[제목개정 2018. 4. 17.]</p> <p>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p>	<p>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p>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p> <p>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p>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p> <p>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p>	<p>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3. 20.]</p>	<p>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과징금납부의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 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p>	<p>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4.]</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3. 20.]</p> <p>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제18조(유해성심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p>	<p>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p> <p>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 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p>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p>

표준	시행령	시행규칙
		<p>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p>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8. 12. 28.></p> <p>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 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 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0. 16.></p> <p>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p>	<p>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p>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p>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의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2018. 10. 16.></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p> <p>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p> <p>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p> <p>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2018. 10. 16.></p>	<p>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p> <p>6.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p> <p>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p> <p>8. 나노물질</p>	<p>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p> <p>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p> <p>④ 삭제 <2016. 8. 4.></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8. 4.,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0조(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p>	<p>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p>	<p>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p>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 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p>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p>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p> <p>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 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p>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년도에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p> <p>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제24조(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p>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p>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p>	<p>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p>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시행일:2015. 1.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7. 1.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8. 1.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19. 1.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p> <p>[시행일:2020. 1.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 중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p>	<p>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p> <p>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p> <p>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p>

변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p>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p>	<p>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p style="text-align: center;">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p>1. 삭제 <2018. 3. 20.></p> <p>2. 삭제 <2018. 3. 20.></p> <p>3. 삭제 <2018. 3. 20.></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p>② 삭제 <2018. 12. 24.></p> <p>③ 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p>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결과(제1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해당 화학물질의 사회경제성분석서 결과(제 1항 본문에 따라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한다)</p> <p>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대책</p> <p>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p> <p>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p>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⑦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시약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 3. 허가유예기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p> <p>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p>②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p>	<p>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회경제성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p> <p>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p>	<p>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 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p>[본조신설 2018. 12. 24.]</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p> <p>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p> <p>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p> <p>8.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p> <p>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 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p> <p>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 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p> <p>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2. 28.></p> <p>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p>		<p>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p>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p> <p>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p> <p>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p> <p>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p> <p>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p> <p>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p> <p>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p> <p>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p> <p>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p> <p>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p> <p>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화학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p> <p>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p> <p>제3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p>	<p>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p> <p>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3.20〉</p> <p>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 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까지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목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p>제33조 삭제 <2018. 3. 20.></p> <p>제34조 삭제 <2018. 3. 20.></p>		<p>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목개정 2018. 12. 28.]</p> <p>제42조 삭제 <2018. 12. 28.></p> <p>제43조 삭제 <2018. 12. 28.></p> <p>제44조 삭제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3.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p>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28.></p> <p>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6조 삭제 <2018. 3. 20.></p> <p>제37조 삭제 <2018. 3.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p>제47조 삭제 <2018. 12. 28.></p> <p>제48조 삭제 <2018. 12. 28.></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보 칙</p> <p>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p>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p> <p>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p> <p>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p> <p>8. 삭제 <2018. 12. 24.></p> <p>9. 삭제 <2018. 12. 24.></p> <p>10. 삭제 <2018. 12. 24.></p> <p>11. 삭제 <2018. 12. 24.></p> <p>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선임된 사실</p> <p>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p> <p>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p>	<p>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p> <p>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p> <p>④ 지방환경관서의 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⑤ 삭제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p> <p>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p> <p>[본조신설 2018. 12. 24.]</p> <p>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p> <p>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p> <p>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p> <p>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p> <p>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 	<p>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p> <p>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협회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p>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p> <p>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p> <p>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p>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분류	시행령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전문 분야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p>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p>	<p>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p> <p>③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유해화학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 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p> <p>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p>		<p>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2. 화학물질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3.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4.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5.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결과6.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결과7. 취급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p>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화학물질의 분</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p>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 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p>[본조신설 2016. 8. 2.]</p>	<p>류·표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의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42조에 따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8. 12. 28.></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p> <p>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삭제 <2018. 3. 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삭제 <2018. 3. 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p>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p>		<p>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7.,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p> <p>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p>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p>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립환경과학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3. 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 <2018. 3. 20.> 6. 삭제 <2018. 3. 20.> 		<p>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삭제 <2018. 12. 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증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증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삭제 <2018. 12. 28.> 6. 삭제 <2018. 12. 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5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가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p>	<p>제30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p> <p>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p>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p> <p>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p> <p>제55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p> <p>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p>	<p>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p> <p>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p> <p>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p> <p>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p> <p>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p> <p>8.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p>	<p>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p> <p>③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본조신설 2018. 12. 28.]</p> <p>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삭제 <2018. 3. 20.> <p>제47조(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p> <p>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 	<p>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p>	<p>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p> <p>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통지</p> <p>2.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p> <p>2의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p> <p>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p> <p>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p> <p>5.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 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p> <p>6.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p> <p>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p> <p>7의2.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p> <p>9.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운영실적 등의 보고 자료의 접수</p> <p>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그 결과의 통지 및 자료의 제출 명령</p> <p>11. 법 제31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p> <p>12. 삭제 <2018. 12. 24.></p> <p>13. 삭제 <2018. 12. 24.></p> <p>14.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15. 삭제 <2016. 8. 2.></p> <p>16. 법 제42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p> <p>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 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기술적 지원</p> <p>1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p> <p>18의2.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p> <p>19.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p> <p>20.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p> <p>21.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p> <p>22. 대통령령 제0000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접수</p> <p>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입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삭제 <2018. 12. 24.>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 신고의 접수4. 삭제 <2018. 12. 24.>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8. 12. 24.></p> <p>1. 삭제 <2018. 12. 24.></p> <p>2. 삭제 <2018. 12. 24.></p> <p>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p> <p>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p> <p>1의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의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p> <p>1의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p> <p>1의5.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p> <p>1의6.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p> <p>1의7.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p> <p>1의8.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p> <p>2. 법 제42조의2제1호·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p> <p>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p> <p>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 8. 2., 2018. 12.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42조의2제2호·제4호·제5호 및 제7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 · 홍보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관한 업무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 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 <2017. 12. 26.> 6. 삭제 <2018. 12. 24.> 7. 삭제 <2018. 12. 24.> 8. 삭제 <2018. 12. 24.> 9. 삭제 <2017. 12. 26.> 10. 삭제 <2018. 12. 24.> <p>[제목개정 2016. 8. 2.]</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48조의2(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p>[본조신설 2016. 1. 27.]</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별 칙</p> <p>제49조 삭제 <2018. 3. 20.></p> <p>제50조(별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별 칙</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별 칙</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p> <p>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p> <p>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p> <p>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p> <p>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p> <p>5. 삭제 <2018. 3. 20.></p> <p>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삭제 <2018. 3. 20.>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p>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p>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p> <p>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p>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1789호, 2013.5.22.></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p>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5835호, 2014.12.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삭제 <2016. 8. 2.></p> <p>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582호, 2014.12.2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p> <p>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 삭제 <2018.1.15.></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p> <p>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p>	<p>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p>	<p>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3891호, 2016.1.27.></p> <p>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7434호, 2016.8.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15호, 2015.10.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672호, 2016.8.4.></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8502호, 2017.12.26.></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p>	<p>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 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12호, 2018.3.20.></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29413호, 2018.12.24.></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0호, 2018.1.15.></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p>	<p>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p> <p>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p> <p>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p> <p>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584호, 2018.4.17.></p> <p>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45호, 2018.1.17.>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p> <p>⑲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p> <p>⑳부터 ㉕까지 생략</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15844호, 2018.10.16.〉</p> <p>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제790호, 2018.12.28.〉</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p> <p>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p> <p>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p> <p>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p>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p>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p> <p>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p> <p>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시행령 별표

- 목 차 -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145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146
[별표 2]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	147
[별표 3]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	150
[별표 4] 과징금의 산정기준.....	150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	151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151

[별표 1]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1) 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에 3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마.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물벼룩 수의 반에게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조류(藻類)에 대한 급성독성 시험에서 시험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I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바.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사. 반복노출독성	1) 사람에게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아. 변이원성	1) 사람에게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자.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차.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카. 기타	1) 위의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또는 혼합물 2) 위의 아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화합물 및 혼합물

※ 비고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text{mg/L} = (\text{ppm} \times \text{분자량} / 24.45) \times 1 / 1,000 (\text{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에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유독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5. 위 항목별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예상 노출량,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유독물질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18. 12. 24.>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變異原性)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1)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물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1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 가. 사람에게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 나. 시험동물용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24.>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용도분류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결합제 (Adhesive·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제거함으로써 백색·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 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 (Cosmetics)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공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25.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Impregnation agents)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용도분류	내용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연화제 (Softners)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닌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용도분류	내용
52.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별표 3] <개정 2018. 12. 24.>

**등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
(제13조제1호 관련)**

구분	제조·수입량
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미만
나.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별표 4] <개정 2018. 12. 24.>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영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3호	개선명령	영무정지 3개월	영무정지 6개월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4호	개선명령	영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 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	800	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0	800	1,000
바.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시행규칙 별표

- 목 차 -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	155
[별표 2] 유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	157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	160
[별표 3의2]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	160
[별표 3의3]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	161
[별표 4] 시험자료의 범위	161
[별표 5]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	162
[별표 6]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	163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	164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	166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	166
[별표 10] 행정처분의 기준	167
[별표 11] 수수료	168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
(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분야	시험항목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3) 및 같은 목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제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2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	---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다목 및 제4호다목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2호3) 및 제3호다목의 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1) 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제3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 3) 잔류단량체의 함량(%)
-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2호1)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4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마. 1,000톤 이상	라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제2호2) 및 3)에 따른 시험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개정 2018. 12. 28.>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제8호에 따른 최종 노출시나리오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해성관리대책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유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이 유사하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 간주되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5)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7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및 7)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 1)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2)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 3)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4)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5) 잔류성·축적성 평가
 - 6) 노출평가(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 7) 안전성 확인
- 사. 바목 6)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바목 1)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바목 2)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환경에서의 분해, 농축 등 거동 특성을 평가한다.
 - 나. 분해성을 고려한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바목 3)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 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 나. 1) 수생(침전물 포함)생물, 2) 육생생물, 3)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화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바목 4)에 따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을 도출하여야 한다.
 - 나. 1) 급성영향(급성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2) 과민성, 3) 반복투여독성, 4) 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바목 5)에 따른 잔류성·축적성 평가
-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8. 바목 6)에 따른 노출 평가
- 가. 노출 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 2) 노출예측
 -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기 가정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 라.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작업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흡입, 경구,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9. 바목 7)에 따른 안전성확인
- 가. 제8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10. 위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 가. 폭발성
 - 나. 인화성
 - 다. 산화성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 가. 수생 환경영역(침전물 포함)
 - 나. 육생 환경영역
 -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화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 가. 급성독성
 - 나. 자극성·부식성
 - 다. 과민성
 - 라. 반복투여독성
 - 마. 변이원성
 - 바. 발암성
 - 사. 생식독성
 - 아. 다른 영향
 - 자.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11. 안전성 확인
 -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환경
 - 인체 건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조건

-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형태, 환기시설 등
-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보관 조건
-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유해화학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 1) 적절한 소화제
-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신설 2018. 12. 28.>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

(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물 분배계수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4) 눈 자극성/부식성 5) 피부 과민성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별표 5] <개정 2018. 12. 28.>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6) 복귀돌연변이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추가 유전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10) 반복투여독성(28일)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1) 반복투여독성(90일)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2) 이분해성
	13) 초기형성	13) 본질적분해성
	14) 2세대 생식독성	14) 생물농축성
	15) 발암성	

3.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1) 추가 유전독성	1) 어류만성독성
2) 해리상수	2) 반복투여독성(90일)	2) 물벼룩만성독성
	3)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초기형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2세대 생식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발암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급성흡입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2.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 2) 공정도(임의 제출)
 -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 및 보관 방법,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연구성과물 및 잔량 발생 시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사후처리결과 생략 가능) 등
※ 비교: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3. 삭제 <2015.10.30.>

[별표 6]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별표 7]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는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다. “인화성 에어로졸”은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하며, 물리적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부터 구분 7까지의 총 7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경구·경피 또는 흡입 노출에 대해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호흡기 또는 피부 노출에 대해 각각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구분 1, 구분 2 및 추가 구분(수유에 대한 또는 수유를 통한)으로 분류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3까지의 총 3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건강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 1 또는 구분 2의 총 2개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급성 구분 및 환경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각각 구분 1부터 구분 4까지의 총 4개의 만성 구분으로 분류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하며, 하나의 구분으로 분류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 나. 소비자 용도
2.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 1) 가)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서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마)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2) 시설의 형태를 가) 저장보관시설, 나) 이송운반시설, 다) 사용시설, 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마)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 나.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인체 노출: 1) 경구, 2) 경피, 3) 흡입, 4)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 나. 환경 노출: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4) 토양, 5)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 가. 돌발적·간헐적, 나. 가끔씩, 다. 지속적·빈번한, 라.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5. 제조·사용량 및 제조·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 가. 일일 평균 제조·사용량을 작성
 - 나. 연간 예상 제조·사용 일수를 작성

[별표 9] <개정 2018. 12. 28.>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 마. 영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1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2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11] <개정 2018. 12. 28.>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50,000원

2.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80%를 감면한다.

시행규칙 별지 서식

- 목 차 -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15호서식] 제조/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189
[별지 제2호서식] 제조/수입/신규/기존 화학물질 등록/변경 신청서... 173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영수통지서/납부영수증..... 190
[별지 제3호서식]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176	[별지 제15호의3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190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177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191
[별지 제5호서식]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 178	[별지 제15호의5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191
[별지 제5호의2서식]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서..... 178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192
[별지 제5호의3서식]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서..... 179	[별지 제16호서식]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192
[별지 제5호의4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180	[별지 제17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통보서..... 193
[별지 제5호의5서식]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 통지서 181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193
[별지 제6호서식]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변경신청서..... 182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194
[별지 제7호서식]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183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194
[별지 제8호서식] 제조/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184	[별지 제21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195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 15.>	[별지 제22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196
[별지 제10호서식]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185	[별지 제23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197
[별지 제10호의2서식] 자료제공 동의서..... 186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198
[별지 제11호서식] 제조/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186	[별지 제24호서식]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198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187	[별지 제25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199
[별지 제13호서식]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188	[별지 제26호서식]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201
[별지 제14호서식] 제조/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188	[별지 제27호서식] 하위사용자·판매자/제조사·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201
	[별지 제28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202

[별지 제29호서식]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203

[별지 제30호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8. 12. 28.>

[별지 제32호서식] 제품 양수자/일반 소비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204

[별지 제33호서식]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서/해임서..... 204

[별지 제34호서식]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205

[별지 제35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205

[별지 제36호서식]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206

[별지 제37호서식]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206

[별지 제38호서식]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207

[별지 제38호의2서식]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208

[별지 제38호의3서식]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208

[별지 제39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209

[별지 제40호서식]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210

[별지 제41호서식]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 210

제조 신규 개별제출 **화학물질** 등록 **신청서**
 수입 기존 공동제출 변경등록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상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변경등록 사항	⑥등록번호				
	톤수 범위				
	유해성·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⑫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용도	⑬용도분류체계				
	⑭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⑮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⑯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상품 내 함량(%)				

(6쪽 중 제2쪽)

⑮ 분류 · 표시	분류				
	표시사항				
물리적 · 화학적 특성	항목	⑮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⑯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에의 정보	⑰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⑱자료 첨부 여부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육단율/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인체유해성	항목	⑮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⑯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에의 정보	⑰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⑱자료 첨부 여부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첨부 여부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항목	㉑자료개요	㉒시험방법	㉓시험결과	㉔자료 첨부 여부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고분자 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 제조 [] 신규 [] 등록 [] 수입 [] 기존 [] 개별제출 화학물질의 [] 변경등록 [] 공동제출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6쪽 참조	수수료 제6쪽 참조
담당 공무원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확인사항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쪽)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구분	(전화번호:)	
	[] 제조·수입자 []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 위탁한 자		
화학물질의 구분	[] 신규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등록의 형태	[] 0.1톤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직인</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신고서 [] 수입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낫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⑥분류체계
용도 ⑦범주 및 구조적 용도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소비자 용도 ()
자료보존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⑥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 이 법 제 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 제10조제4항 [] 제6조의3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12조제3항 [] 제11조의2제4항
따라 [] 제조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신고 합니다.
[] 수입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로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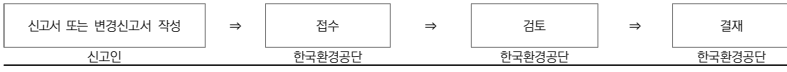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1.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3.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4. ⑤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5.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6. ⑥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7. ⑭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소유하고 있는 서류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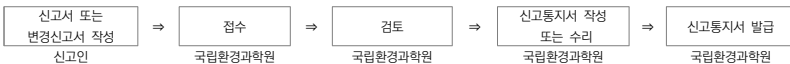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 ③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④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 ⑤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⑧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⑥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⑨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⑩란에는 여러 수입자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 등록 신청서
 수입 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	-----	-----	------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연/제(수입)예 정량(톤)	⑤ 금회 제(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	----------	-----------------------	-------	----------------	-------

⑬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	--------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11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 수입 화학물질의 등록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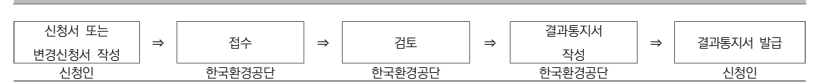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조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조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다.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면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
-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 ⑧란 ~ ⑩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 15.>

[] 제조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사항	①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변경 전	변경 후
② 신고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 제조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수입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①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통지서에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1. 15.>

자료제공 동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아래의 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할 자료의 목록	
동의서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조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용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③분식·구분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input type="checkbox"/>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0.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01톤 이상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1톤 미만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인 경우)	①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⑯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 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로 없 음
------	---	---------------

작성방법

-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⑨란은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⑮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 ⑯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 x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등록 여부	[] 등록 [] 미등록	
	등록형태	[] 0.1톤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고분자화합물 [] 현장분리중간체 [] 수송분리중간체 []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0.1톤 이상 1톤 미만)	
등록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익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2. 28.>

[] 제조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화학물질의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량(톤)	⑭ 수입국
⑮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제조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에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
지방(유역)환경청장	
[인]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
귀하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
수납기관	

297mm×210mm[백상지 80g/㎡]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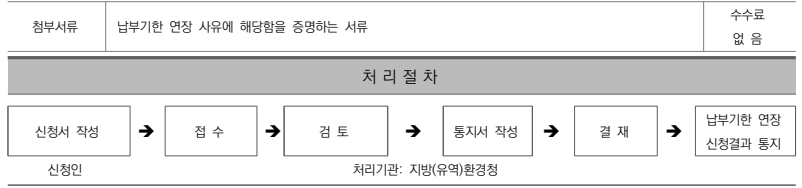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초 납부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 허용 또는 연장 불허용의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남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 할 납 부 신 청 금 액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 검토
	→ 통지서 작성	→ 결재
		→ 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8. 12. 28.>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 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허용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6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과징금 부과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전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심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립환경과학원 (전화번호:)			
시행일자: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등록(변경등록)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시험자료 명칭		
	③ 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개별 사업자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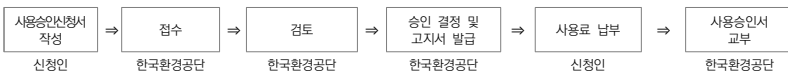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	----	--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8. 12. 28.>

제 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성명(운영책임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범위	분 야	① 세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	
	[] 인체유해성(건강영향) 시험	
	[] 환경유해성(생태영향) 시험	
	[] 환경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시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현황 내역서 5부 2. 운영 현황 내역서 5부 3. 시험능력(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증명하는 자료 각 5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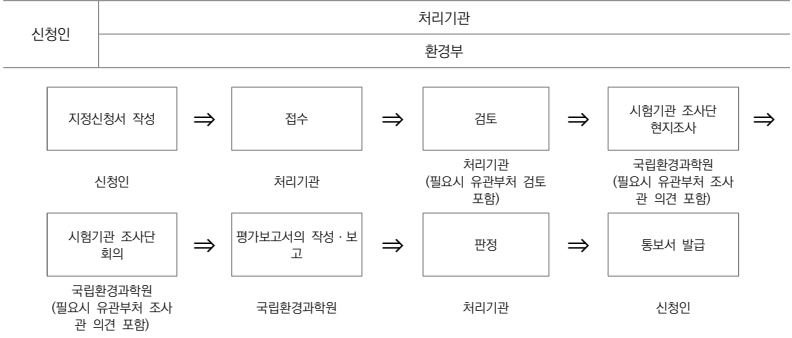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유해성 시험방법의 분야별 시험항목 중 지정받으려는 세부시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현지평가 필요시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및 운영책임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신청범위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변경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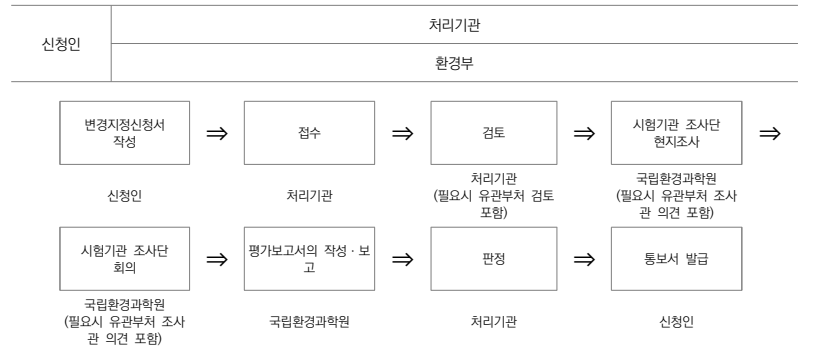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①란과 ②란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의 전과 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변경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8. 12. 28.>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자	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시험책임자 ()명, 신뢰성보증 ()명, 시험담당자 ()명, 기타 ()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험물질 (CAS No. 등)	시험 의뢰자	시험 책임자	시험 계약일	시험개시 (예정)일	시험종료 (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영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성 방법

1. 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2. 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p>「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	[] 유독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분류 표시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화학물질 등록번호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상세기술)	

2. 물 리 적 · 화 학 적 특 성	성상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
	인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물용해도	기타

3. 분 류 표 시 정 보	구분	유해성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 해 성 정 보	인 체 유 해 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지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3쪽)

4. 유해성 정보	환경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수생생물독성	
		육상생물독성	
		분해성	
	기타		
	물리적위험성		
5. 노출 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 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방법		
7. 화재시 대처 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8. 누출시 방제 요령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9. 폐기 방법	폐기방법		

(제4쪽)

10. 유해 화학 물질 함유 정보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11. 위해성 정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3. 참고 자료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등록번호 · 신고번호 (※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 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유해화학물질 등 여부	<input type="checkbox"/> 유독물질 <input type="checkbox"/> 허가물질 <input type="checkbox"/> 제한물질 <input type="checkbox"/> 금지물질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위험성, <input type="checkbox"/> 건강 유해성, <input type="checkbox"/>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 해 성 정 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 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하위사용자 · 판매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제조자 · 수입자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 질 정 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상품명		
	함량 및 함량범위(%)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기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화학물질 노출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기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뒤쪽)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점관 리물질의 용도 (기능)	⑤제품 내 중점관리 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 관리물질 함량(%)	⑦제품별 중점관리물 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 라 선임된 자 인 경우)	⑧상호(명칭)	⑨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대표자	⑪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수입량(톤)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 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	---	---

작성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①란은 ⑦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용합니다.
-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용합니다. ③란 ~ ⑦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 ④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용합니다.
- ⑤란은 경우, 경피,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용합니다.
- ⑥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⑦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용합니다.
- ⑧란 ~ ⑬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용합니다. 다만,
⑨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⑭란은 신고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8. 12. 28.>

[] 제품 양수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 일반 소비자



제 공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 품 정 보	제품명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 전 사 용 정 보	항목	주요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 선임서
[] 해임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선임
[] 해임 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의 요건 증명서류 1부 2. 선임(해임) 사본 등 선임(해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1부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선임서 또는 변경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선임서 또는 해임서 제출인	⇒ 접수 처리기관
	⇒ 검토 처리기관
	⇒ 신고증 통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선입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유역)환경청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조직·인력·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뒤쪽)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5.10.3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보호			
제 호	자료	수리결과통지서		
	[] 보호기간 연장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수리결과	화학물질명 (총칭명)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자료 비보호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호 기관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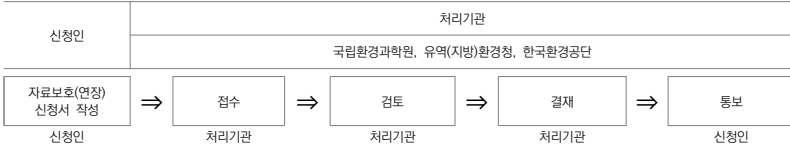
첨부서류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자료 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은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②란 ~ ⑦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⑥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8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관리번호	

신청사항	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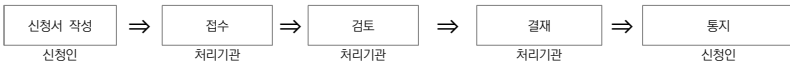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관리번호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	-----	------	----------------------------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8호의3서식] <신설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관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해지결과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	
	보호해지 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 해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의 해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
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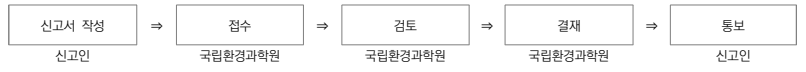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상품명		
	①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톤)		
	②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첨부서류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①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 x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 x 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등록번호			
등록형태	<input type="checkbox"/> 0.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0.1톤 이상 ~ 1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톤 이상 ~ 1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톤 이상 ~ 1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input type="checkbox"/> 1,000톤 이상 <input type="checkbox"/> 고분자화합물 <input type="checkbox"/> 현장분리중간체 <input type="checkbox"/> 수송분리중간체		
화학물질의 용 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1호서식] <신설 2018. 12. 28.>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 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 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출사항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① 등록번호		
	② 등록 신청한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③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kg)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의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량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에 적은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kg)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실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제출인	⇒	접수 국립환경과학원	⇒	검토 국립환경과학원	⇒	결재 국립환경과학원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록

-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213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223
-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237
- 신고대상 고분자화학물질..... 241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2호, 2018. 12.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018-232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제2조 관련)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1	Carbon monoxide	630-08-0
2	1,2-Dichloropropane	78-87-5
3	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4	Sulfuric acid lead salt, tetrabasic	52732-72-6
5	Nickel sulfide	11113-75-0
6	C.I. pigment green 13	148092-61-9
7	Chromium oxide	11118-57-3
8	Arsenic acid copper salt	10103-61-4
9	Barium chromate	10294-40-3
10	Arsenic sulfides	1303-33-9
11	(2E)-1,4-Dichloro-2-butene	110-57-6
12	C.I. pigment yellow 035	8048-07-5
13	Lead dichloride	7758-95-4
14	Fatty acids, (C=12-18), lead salts	68131-60-2
15	Methanesulfonic acid, lead salt	95860-12-1
16	Magnesium chromate	13423-61-5
17	Arsenic hydride	7784-42-1
18	N-(4-Ethoxyphenyl)acetamide; N-Acetyl-4-ethoxyaniline, p-Acetophenetidine, p-Ethoxyacetanilide, Acetophenetidin, Phenacetin	62-44-2
19	Silicic acid zirconium salt, cadmium pigment-encapsulated	102184-95-2
20	Beryllium(Inorganic metal)	7440-41-7
21	Sodium chromate	7775-11-3
22	Lead(2+) silicate	10099-76-0
23	Silicic acid lead salt	11120-22-2
24	Lead molybdate (PbMoO4)	10190-55-3
25	Lead sulfide	1314-87-0
26	Zinc chromate	13530-65-9
27	Lead silicochromate	11113-70-5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28	Lead titanium zirconium oxide	12626-81-2
29	Dilead oxide	12059-89-1
30	Calcium dichromate	14307-33-6
31	Potassium perfluorooctanesulfonate	2795-39-3
32	Lead acetate	1335-32-6
33	Cadmium sulfate	10124-36-4
34	Calcium chromate	13765-19-0
35	Phenylhydrazine	100-63-0
36	Chromic acid (H2CrO4), chromium(3+) salt (3:2)	24613-89-6
37	Mechlorethamine	51-75-2
38	p-Aminoazobenzene	60-09-3
39	Warfarin	81-81-2
40	2,3-Dibromo-1-propanol	96-13-9
41	Methylarsonic acid; Methanearsonic acid, DSMA	124-58-3
42	9-Methoxy-7H-furo[3,2-g][1]benzopyran-7-one; 9-Methoxyfuro[3,2-g]chromen-7-one, 6-Hydroxy-7-methoxy-5-benzofuranacrylic acid δ -lactone, Methoxsalen	298-81-7
43	6-[(1-Methyl-4-nitro-1H-imidazol-5-yl)thio]-1H-purine; Azathioprine, 6-(1-Methyl-4-nitro-5-imidazolyl)thiopurine	446-86-6
44	Mustard gas	505-60-2
45	Tetraphenylarsonium chloride	507-28-8
46	Cadmium carbonate	513-78-0
47	Cadmium cyanide	542-83-6
48	Cadmium acetate	543-90-8
49	Glycidol	556-52-5
50	Nickel dicyanide	557-19-7
51	Diethylcadmium	592-02-9
52	Lead dithiocyanate	592-87-0
53	o-Toluidine chloride	636-21-5
54	Diarsenic triselenide	1303-36-2
55	Cadmium telluride	1306-25-8
56	Lead oxide (Pb2O3)	1314-27-8
57	Lead oxide phosphonate (Pb3O2(HPO3)), hemihydrate	1344-40-7
58	C.I. direct blue 006	2602-46-2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59	Cadmium dilaurate	2605-44-9
60	Cadmium diformate	4464-23-7
61	Arsenic acid, sodium salt	7631-89-2
62	Trilead bis(orthophosphate)	7446-27-7
63	Lead tungsten tetraoxide	7759-01-5
64	Arsenic acid	7778-39-4
65	Copper arsenate (Cu3(AsO4)2)	7778-41-8
66	Calcium arsenate	7778-44-1
67	Lead difluoride	7783-46-2
68	Lead(4+) fluoride	7783-59-7
69	Trisilver arsenite	7784-08-9
70	Arsenic tribromide	7784-33-0
71	Arsenic trichloride	7784-34-1
72	Trifluoroarsine	7784-35-2
73	Pentafluoroarsorane	7784-36-3
74	Manganese hydrogen arsenate	7784-38-5
75	Potassium dihydrogen arsenate	7784-41-0
76	Diammonium hydrogen arsenate	7784-44-3
77	Arsenic triiodide	7784-45-4
78	Sodium dioxoarsenate	7784-46-5
79	Cadmium bromide	7789-42-6
80	Cadmium fluoride	7790-79-6
81	Cadmium iodide	7790-80-9
82	Cadmium iodate	7790-81-0
83	Cadmium wolframate	7790-85-4
84	Lead arsenite	10031-13-7
85	Lead dibromide	10031-22-8
86	Lead divanadium hexaoxide	10099-79-3
87	Lead diiodide (PbI2)	10101-63-0
88	Iron arsenate	10102-49-5
89	Iron bis(arsenate)	10102-50-8
90	Arsenic acid magnesium salt	10103-50-1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91	Cadmium chloride	10108-64-2
92	Potassium arsonate	10124-50-2
93	Copper arsonate	10290-12-7
94	Cadmium nitrate	10325-94-7
95	Dibismuth dilead tetraruthenium tridecaoxide	11116-83-9
96	Lead chromate	11119-70-3
97	Chrysotile(Mg3H2(SiO4)2.H2O)	12001-29-5
98	Tricopper arsenide	12005-75-3
99	Dysprosium arsenide (DyAs)	12005-81-1
100	Diiron arsenide	12005-88-8
101	Gadolinium arsenide	12005-89-9
102	Holmium arsenide (HoAs)	12005-92-4
103	Lutetium arsenide (LuAs)	12005-94-6
104	Manganese arsenide	12005-95-7
105	Manganese arsenide (Mn2As)	12005-96-8
106	Terbium arsenide (TbAs)	12006-08-5
107	Thallium arsenide (TlAs)	12006-09-6
108	Ytterbium arsenide	12006-12-1
109	Tricadmium diarsenide	12006-15-4
110	Iron diarsenide	12006-21-2
111	Trizinc diarsenide	12006-40-5
112	Cadmium titanium trioxide	12014-14-1
113	Cadmium phosphide (Cd3P2)	12014-28-7
114	Dodecairon lead nonadecaoxide	12023-90-4
115	Lead disodium dioxide	12034-30-9
116	Lead diniobium hexaoxide	12034-88-7
117	Lead tin oxide (PbSnO3)	12036-31-6
118	Lead sulfate, basic	12036-76-9
119	Iron arsenide	12044-16-5
120	Gallium arsenide phosphide (Ga2AsP)	12044-20-1
121	Tripotassium arsenide	12044-21-2
122	Trilithium arsenide	12044-22-3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123	Trisodium arsenide	12044-25-6
124	Praseodymium arsenide (PrAs)	12044-28-9
125	Cobalt arsenide (CoAs2)	12044-42-7
126	Magnesium arsenide (Mg3As2)	12044-49-4
127	Arsenic telluride (As2Te3)	12044-54-1
128	Zinc arsenide (ZnAs2)	12044-55-2
129	Bismuth compound with lead (1:1)	12048-28-1
130	Lead titanium trioxide	12060-00-3
131	Lead zirconium trioxide	12060-01-4
132	Lead ditantalum hexaoxide	12065-68-8
133	Nickel diarsenide	12068-61-0
134	Lead disulfide	12137-74-5
135	Cadmium peroxide (Cd(O2))	12139-22-9
136	Cadmium zirconium oxide	12139-23-0
137	Cadmium chloride phosphate (Cd5Cl(PO4)3)	12185-64-7
138	Cadmium niobium oxide (Cd2Nb2O7)	12187-14-3
139	Lead chloride oxide	12205-72-0
140	Dichromium arsenide	12254-85-2
141	Erbium arsenide (ErAs)	12254-88-5
142	Lanthanum arsenide (LaAs)	12255-04-8
143	Niobium arsenide (NbAs)	12255-08-2
144	Neodymium arsenide (NdAs)	12255-09-3
145	Triantimony arsenide	12255-36-6
146	Samarium arsenide	12255-39-9
147	Yttrium arsenide	12255-48-0
148	Tribarium diarsenide	12255-50-4
149	Tricalcium diarsenide	12255-53-7
150	Cobalt arsenide (CoAs3)	12256-04-1
151	Lead hydroxide nitrate	12268-84-7
152	Germanium arsenide	12271-72-6
153	Cadmium tantalum oxide (CdTa2O6)	12292-07-8
154	Arsenic sulfide (As2S4)	12344-68-2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155	Potassium pentadecaaxodiplumbatepentaniobate(1-)	12372-45-1
156	Trisilver arsenide	12417-99-1
157	Lead germanate	12435-47-1
158	Dioxobis(stearato)trilead: Lead, bis(octadecanoato)dioxotri-	12578-12-0
159	Basic lead sulfite	12608-25-2
160	Lead tungsten oxide	12737-96-3
161	Lead oxide sulfate	12765-51-4
162	Diarsenic acid	13453-15-1
163	Dilead pyrophosphate	13453-66-2
164	Ammonium dihydrogenarsenate	13462-93-6
165	Nickel carbonyl	13463-39-3
166	Potassium arsenite	13464-35-2
167	Trisodium arsenite	13464-37-4
168	Trisodium arsenate	13464-38-5
169	Zinc arsenate	13464-44-3
170	Tristrontium diarsenate	13464-68-1
171	Tribarium diarsenate	13477-04-8
172	Tricadmium bis(phosphate)	13477-17-3
173	Trinickel bis(arsenate)	13477-70-8
174	Trilithium arsenate	13478-14-3
175	Lead thiosulfate	13478-50-7
176	Boron arsenate	13510-31-1
177	Trisilver arsenate	13510-44-6
178	Copper chromate	13548-42-0
179	Diboron tricadmium hexaoxide: Cadmium borate	13701-66-1
180	Telluric acid (H ₂ TeO ₄), lead(2+) salt (1:1)	13845-35-7
181	Phosphoric acid, cadmium salt	13847-17-1
182	Cadmium molybdenum oxide (CdMoO ₄)	13972-68-4
183	Sulfamic acid cadmium salt (2:1)	14017-36-8
184	Zinc dichromate	14018-95-2
185	Lithium chromate	14307-35-8
186	Tetrafluoroborate(1-), cadmium (2:1)	14486-19-2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187	Phosphoric acid, ammonium cadmium salt (1:1:1)	14520-70-8
188	Lead metaborate	14720-53-7
189	Nickel chromate	14721-18-7
190	Chromyl dichloride	14977-61-8
191	Sodium metaarsenate	15120-17-9
192	Nickel dichromate	15586-38-6
193	Diphosphoric acid cadmium salt (1:2)	15600-62-1
194	Phosphoric acid, lead(2+) salt (1:1)	15845-52-0
195	Telluric acid (H ₂ TeO ₃), cadmium salt (1:1)	15851-44-2
196	Telluric acid (H ₂ TeO ₃), lead(2+) salt (1:1)	15851-47-5
197	Telluric acid (H ₂ TeO ₄), cadmium salt (1:1)	15852-14-9
198	Benzoic acid lead salt	15907-04-7
199	Lead phosphite	16038-76-9
200	C.I. direct brown 095	16071-86-6
201	Potassium hexafluoroarsenate	17029-22-0
202	Lead chromate oxide (Pb ₂ (CrO ₄)O)	18454-12-1
203	Nickel(2+) hydrogen citrate	18721-51-2
204	Lead hydroxide (Pb(OH) ₂)	19783-14-3
205	Lead cyanamidate	20890-10-2
206	Lead silicate	22569-74-0
207	Tricobalt diarsenate	24719-19-5
208	Lead diiodate	25659-31-8
209	Lead sulfite	25666-92-6
210	Cobalt arsenide (CoAs)	27016-73-5
211	Nickel arsenide	27016-75-7
212	Manganese arsenate	27526-45-0
213	Hexafluoroarsenate(1-) lithium	29335-35-1
214	Europium arsenide (EuAs)	32775-46-5
215	Lead cyanamide	35112-70-0
216	Orthoboric acid lead(2+) salt	35498-15-8
217	Lead ruthenium oxide (PbRuO ₃)	37194-88-0
218	Strontium arsenide (Sr ₃ As ₂)	39297-24-0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219	Lead chloride silicate	39390-00-6
220	Sulfuric acid barium lead salt	42579-89-5
221	Boric acid cadmium salt	51222-60-7
222	Sulfurous acid, lead salt, basic	52231-92-2
223	Zinc arsenide	56450-43-2
224	Zirconium arsenide (ZrAs)	60909-47-9
225	Naphthenic acids cadmium salts	61789-34-2
226	Lead silicate sulfate (Pb ₂ (SiO ₃)(SO ₄))	67711-86-8
227	Fatty acids, (C=10-18), cadmium salts	68131-58-8
228	Fatty acids, (C=12-18), cadmium salts	68131-59-9
229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lead-doped	68332-81-0
230	Fatty acids, (C=14-18), cadmium salts	68409-82-5
231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chloride-doped	68512-49-2
232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manganese-doped	68512-50-5
233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pper-doped	68512-51-6
234	Spinel, boron calcium lead silicon white	68555-05-5
235	Spinel, lead silicon tin zinc white	68555-07-7
236	Zinc sulfide (ZnS), copper and lead-doped	68585-90-0
237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balt and copper and silver-doped	68784-10-1
238	Barium cadmium calcium chloride fluoride phosphate, antimony and manganese-doped	68784-55-4
239	Boric acid (H ₆ B ₄ O ₉) cadmium salt (1:3), manganese-doped	68784-58-7
240	Silicic acid (H ₄ SiO ₄) magnesium manganese (2+) zinc salt, arsenic and lead-doped	68784-76-9
241	Fatty acids, tall oil, cadmium salts	68855-80-1
242	Barium cadmium sulfide (Ba ₂ CdS ₃), solid soln. with barium zinc sulfide (Ba ₂ ZnS ₃), manganese-doped	68876-90-4
243	Cadmium sulfide (CdS), aluminum and copper-doped	68876-98-2
244	Cadmium sulfide (CdS), aluminum and silver-doped	68876-99-3
245	Cadmium sulfide (CdS), copper chloride-dope	68877-00-9
246	Cadmium sulfide (CdS), silver chloride-doped	68877-01-0
247	Cadmium sulfide (CdS), copper and lead-doped	68891-87-2
248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cadmium salts	68953-39-9
249	Cadmium, laurate palmitate stearate complexes	68954-18-7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250	Resin acids and Rosin acids, cadmium salts	68956-81-0
251	Barium bismuth lead niobium titanium oxide	68987-33-7
252	Lead chromate silicate (Pb ₃ (CrO ₄)(SiO ₄))	69011-07-0
253	Cadmium, dross	69011-69-4
254	Cadmium, sponge	69011-70-7
255	Lead, dross	69029-52-3
256	Calcines, cadmium residue	69029-63-6
257	Lead ores, sintered	69029-74-9
258	Fatty acids, (C=12-18), barium cadmium salts	70084-75-2
259	Silver arsenide (Ag ₂ As)	70333-07-2
260	Arsenous acid lithium salt	72845-34-2
261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balt and copper-doped	72869-26-2
262	Fatty acids, coco, cadmium salts	72869-63-7
263	Cadmium zinc lithopone yellow	90604-89-0
264	Cadmium lithopone yellow	90604-90-3
265	Gallium zinc triarsenide	98106-56-0
266	Vanadium(4+) diarsenate (1:1)	99035-51-5
267	Sulfuric acid barium salt (1:1), lead-doped	99328-54-8
268	Barium tetrachlorocadmiate(2-)	99587-10-7
269	Cadmium chloride phosphate (Cd ₅ C(PO ₄) ₃), manganese-doped	100402-53-7
270	Lead, dross, vanadium-zinc-contg.	100656-49-3
271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and titanium oxide (TiO ₂), praseodymium-doped	101356-99-4
272	Arsenic acid (H ₃ AsO ₄), magnesium salt, manganese-doped	102110-21-4
273	Barium oxide (Ba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strontium oxide and tungsten oxide (WO ₃), lead-doped	102110-24-7
274	Boric acid (H ₃ BO ₃), solid soln. with barium oxide, calcium oxide and strontium oxide, lead and manganese-doped	102110-26-9
275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magnesium oxide, tungsten oxide (WO ₃) and zinc oxide	102110-30-5
276	Silicic acid calcium salt, lead and manganese-doped	102110-36-1
277	Slimes and Sludges, copper-lead ore roasting off gas scrubbing, arsenic-contg.	102110-62-3
278	Cycloheximide	66-81-9
279	(R)-4-hydroxy-3-(3-oxo-1-phenylbutyl)-2-benzopyrone	5543-58-8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280	(S)-4-hydroxy-3-(3-oxo-1-phenylbutyl)-2-benzopyrone	5543-57-7
281	Binapacryl	485-31-4
282	Lead methane sulfonate	17570-76-2
283	Dinoterb	1420-07-1
284	Lead styphnate	15245-44-0
285	Lead diazide	13424-46-9
286	Dinocap	39300-45-3
287	Toluidine	26915-12-8
288	13-cis-Retinoic acid	4759-48-2
289	Disodium hydrogenarsenate	7778-43-0
290	Arsenic acid calcium salt	10103-62-5
291	Calcines, lead-zinc ore conc.	94551-62-9
292	Chromic acid, potassium zinc salt; Potassium zinc chromate	41189-36-0
293	Chromic acid (H2CrO4) bis(triphenylsilyl) ester; Bis(triphenylsilyl) chromate	1624-02-8
294	Silver chromate	7784-01-2
295	Lead bis(dipentyl)dithiocarbamate)	36501-84-5
296	Lead tetraacetate	546-67-8
297	Dibasic lead phthalate	6838-85-3
298	Octadecanoic acid lead salt; Stearic acid lead salt	7428-48-0
299	Chromic acid (H2Cr2O7) compd. with pyridine (1:2)	20039-37-6
300	Dirubidium dichromate	13446-73-6
301	Lead acetate	15347-57-6
302	Chromic acid (H2CrO4), cobalt(2+) salt (1:1)	13455-25-9
303	Lead octoate	15696-43-2
304	C.I. pigment red 090	51868-24-7
305	Dicesium chromate	13454-78-9
306	Basic lead styphnate	12403-82-6
307	Mercury dichromate	7789-10-8
308	Diiron tris(chromate)	10294-52-7
309	2-Ethylhexanoic acid, lead salt; Hexanoic acid, 2-ethyl-, lead salt	16996-40-0
310	(Z)-9-Octadecenoic acid lead(2+) salt	1120-46-3
311	Chromium copper zinc oxide	1336-14-7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312	Dithallium dichromate	13453-35-5
313	Dithallium chromate	13473-75-1
314	disodium methylarsonate	144-21-8
315	Potassium chlorotrioxochromate	16037-50-6
316	2,7-(Bis(2-arsonophenylazo))-1,8-dihydroxynaphthalene-3,6-disulfonic acid	1668-00-4
317	o-Toluidine dihydrochloride	22006-17-3
318	Dichromic acid sodium salt	34493-01-1
319	Arsinous dichloride, (2-chloroethenyl)-	541-25-3
320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lead salts	68605-98-1
321	C.I. pigment yellow 037	68859-25-6
322	Silver dichromate	7784-02-3
323	Lead bis(dimethyldithiocarbamate): Lead, bis(dimethylcarbomdithioato-kS,kS')-, (T-4)-	19010-66-3
324	p-tert-Butylbenzoic acid lead salt	3249-60-3
325	Octadecanoic acid, lead(2+) salt, tribasic; Tribasic lead stearate	52080-60-1
326	Fatty acids, tall oil, lead manganese salts	61788-53-2
327	Linseed oil, reaction products with lead oxide (Pb3O4) and mastic	68152-99-8
328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lead(2+) bis(2-methyl-2-propenoate) and α -(2-methyl-1-oxo-2-propenyl)- ω -[(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1,2-ethanediyl); Methyl methacrylate-styrene-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ic acid-methacrylic acid lead salt copolymer	68155-47-5
329	Fatty acids, (C=8-10)-branched, lead salts, basic	68409-79-0
330	Linseed oil, lead manganese salt	68553-17-3
331	Fatty acids, (C=6-19)-branched, lead salts, basic	68603-83-8
332	Carboxylic acids, tall oil, lead salts, basic	68603-93-0
333	Castor oil, dehydrated polymer with rosin, calcium lead zinc salt	68604-05-7
334	Calcium, acetate coco fatty acids decanoate hydrogenated tallow fatty acids octanoate lead complex	68784-59-8
335	Resin acids and Rosin acids, calcium lead salts	68952-91-0
336	Linseed oil polymer with tung oil, lead salt	68990-75-0
337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mixed with acetic acid, coconut oil, decanoic acid and octanoic acid, calcium lead salts	69103-04-4
338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polymers with dehydrated castor oil fatty acids and glycerol, lead salts	70879-91-3
339	Silicon carbide	409-21-2
340	Asphalt, oxidized	64742-93-4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341	Cobalt metal with Tungsten carbide	7440-48-4 & 12070-12-1
342	Tetrafluoroethene	116-14-3
343	Indium phosphide (InP)	22398-80-7
344	Dimethylnitrosoamine: n-Nitrosodimethylamine	62-75-9
345	1,2,3-Trichloropropane	96-18-4
346	[R-(R*,R*)]-2,2-Dichloro-N-[2-hydroxy-1-(hydroxymethyl)-2-(4-nitrophenyl)ethyl]acetamide; Chloramphenicol, D-Chloramphenicol	56-75-7
347	Dimethylcarbonyl chloride	79-44-7
348	Bromoethene: Vinyl bromide	593-60-2
349	Malathion	121-75-5
350	N-(Phosphonomethyl)glycine: Glyphosate	1071-83-6
351	Trichloroacetaldehyde: Chloral anhydride	75-87-6
352	Resin acids and Rosin acids, lead salts	9008-26-8
353	Hydrazine hydrate	7803-57-8
354	Lead sulfite (PbSO3)	7446-10-8
355	Lead acetate	301-04-2
356	Nickel subsulfide	16812-54-7
357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68515-51-5
358	Lead bis(tetrafluoroborate)	13814-96-5
359	C.I. pigment yellow 041	8012-00-8
360	Tetraethyl lead	78-00-2
361	C.I. basic blue 026	2580-56-5
362	α,α -Bis[4-(dimethylamino)phenyl]-4-(phenylamino)-1-naphthalenemethanol	6786-83-0
363	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364	Lead dipicrate: Phenol, 2,4,6-trinitro-, lead(2+) salt	6477-64-1
기타	위의 해당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대상에 해당함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시행 2019. 7. 1.] [환경부고시 제2018-233호, 2018. 12. 28.,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등

제2조(중점관리물질)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부칙 <제2018-233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물질은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한다.

[별표1]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 ('19.7.1시행)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	Formaldehyde	50-00-0	CMR
2	benzo[def]chrysene	50-32-8	CMR, PBT
3	Mechlorethamine	51-75-2	CMR
4	Urethane	51-79-6	CMR
5	carbon tetrachloride	56-23-5	CMR, STOT
6	diphenoarsin-10-yl oxide	58-36-6	CMR
7	Aniline	62-53-3	CMR, STOT
8	diethyl sulphate	64-67-5	CMR
9	Chloroform	67-66-3	CMR, STOT
10	N,N-Dimethylformamide	68-12-2	CMR
11	Benzene	71-43-2	CMR, STOT
12	cobalt di(acetate)	71-48-7	CMR
13	Chloroethane	75-00-3	STOT
14	chloroethylene	75-01-4	CMR
15	Dichloromethane	75-09-2	CMR
16	Formamide	75-12-7	CMR
17	carbon disulphide	75-15-0	STOT
18	Trichloroacetaldehyde; Chloral anhydride	75-87-6	CMR
19	phenolphthalein	77-09-8	CMR
20	dimethyl sulphate	77-78-1	CMR
21	Tetraethyl lead	78-00-2	CMR
22	isoprene	78-79-5	CMR
23	1,2-Dichloropropane	78-87-5	CMR
24	trichloroethylene	79-01-6	CMR
25	Acrylamide	79-06-1	CMR, STOT
26	2,2',6,6'-tetrabromo-4,4'-isopropylidenediphenol	79-94-7	CMR, PBT
27	4,4'-isopropylidenediphenol	80-05-7	CMR, EDCs
28	p-(1,1-Dimethylpropyl)phenol	80-46-6	EDCs
29	Diisobutyl phthalate	84-69-5	CMR, EDCs
30	Dibutyl phthalate	84-74-2	CMR, EDCs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31	dihexyl phthalate	84-75-3	CMR
32	cyclohexane-1,2-dicarboxylic anhydride	85-42-7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33	Benzyl butyl phthalate	85-68-7	CMR, EDCs
34	2-nitrotoluene	88-72-2	CMR
35	dinoseb	88-85-7	CMR
36	o-Anisidine	90-04-0	CMR
37	4,4'-bis(dimethylamino)benzophenone	90-94-8	CMR
38	Quinoline	91-22-5	CMR
39	3,3'-Dichlorobenzidine	91-94-1	CMR
40	o-xylene	95-47-6	STOT
41	o-Toluidine	95-53-4	CMR
42	1,3-Dichloropropan-2-ol	96-23-1	CMR
43	Imidazolidine-2-thione	96-45-7	CMR
44	a,a,a-trichlorotoluene	98-07-7	CMR
45	Benzoyl chloride	98-88-4	CMR
46	Nitrobenzene	98-95-3	CMR, STOT
47	Styrene	100-42-5	CMR, STOT
48	a-chlorotoluene	100-44-7	CMR
49	Phenyldiazine	100-63-0	CMR, STOT
50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CMR
51	4,4'-methylenedianiline	101-77-9	CMR
52	4,4'-Oxydianiline	101-80-4	CMR
53	p-xylene	106-42-3	STOT
54	1-Chloro-2,3-epoxypropane	106-89-8	CMR
55	1-Bromopropane	106-94-5	CMR
56	Acrylonitrile	107-13-1	CMR
57	ethylenediamine	107-15-3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58	Chloromethyl methyl ether	107-30-2	CMR
59	m-xylene	108-38-3	STOT
60	2-Methoxyethano	109-86-4	CMR
61	(2E)-1,4-Dichloro-2-butene	110-57-6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62	1,2-Dimethoxyethane	110-71-4	CMR
63	2-Ethoxyethanol	110-80-5	CMR
64	2-ethoxyethyl acetate	111-15-9	CMR
65	bis(2-methoxyethyl) ether	111-96-6	CMR
66	1,2-Bis(2-methoxyethoxy)ethane	112-49-2	CMR
67	tris(2-chloroethyl) phosphate	115-96-8	CMR
68	Tetrafluoroethene	116-14-3	CMR
69	bis(2-ethylhexyl) phthalate	117-81-7	CMR, EDCs
70	3,3'-Dimethoxybenzidine	119-90-4	CMR
71	6-Methoxy-m-toluidine	120-71-8	CMR
72	2,4-Dinitrotoluene	121-14-2	CMR
73	C,C'-Azodi(formamide)	123-77-3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74	Tetrachloroethylene	127-18-4	CMR
75	N,N-Dimethylacetamide	127-19-5	CMR
76	4-(1,1,3,3-Tetramethylbutyl)phenol	140-66-9	EDCs
77	Benzothiazole-2-thiol	149-30-4	CMR
78	Lead acetate	301-04-2	CMR
79	lead bis(2-ethylhexanoate)	301-08-6	CMR
80	Hydrazine	302-01-2	CMR
81	Linuron	330-55-2	CMR
82	Diazinon	333-41-5	CMR
83	pentadecafluorooctanoic acid	335-67-1	CMR, PBT, STOT
84	Silicon carbide	409-21-2	CMR
85	cobalt carbonate	513-79-1	CMR
86	[4-[4,4'-bis(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48-62-9	CMR
87	benzene-1,2,4-tricarboxylic acid 1,2-anhydride	552-30-7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88	Glycidol	556-52-5	CMR
89	3,3'-Dichlorobenzidine dihydrochloride	612-83-9	CMR
90	methoxyacetic acid	625-45-6	CMR
91	Carbon monoxide	630-08-0	CMR, STOT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92	dibutyltin dichloride	683-18-1	CMR, STOT
93	1-Methyl-2-pyrrolidone	872-50-4	CMR
94	lead distearate	1072-35-1	CMR
95	1,3-Propanesultone	1120-71-4	CMR
96	bis(pentabromophenyl) ether	1163-19-5	PBT
97	Gallium arsenide	1303-00-0	CMR, STOT
98	Arsenic sulfides	1303-33-9	CMR
99	diboron trioxide	1303-86-2	CMR
100	Cadmium oxide	1306-19-0	CMR, STOT
101	cadmium sulphide	1306-23-6	CMR, STOT
102	Lead dioxide	1309-60-0	CMR
103	nickel monoxide	1313-99-1	CMR, STOT
104	Lead oxide (Pb2O3)	1314-27-8	CMR
105	orange lead	1314-41-6	CMR
106	Lead sulfide	1314-87-0	CMR
107	lead monoxide	1317-36-8	CMR
108	diarsenic trioxide	1327-53-3	CMR
109	xylene	1330-20-7	STOT
110	disodium tetraborate, anhydrous	1330-43-4	CMR
111	chromium trioxide	1333-82-0	CMR, STOT
112	lead sulfochromate yellow	1344-37-2	CMR
113	tributyltin chlorid	1461-22-9	STOT
114	cadmium di(octanoate)	2191-10-8	CMR
115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CMR
116	C.I. basic blue 026	2580-56-5	CMR
117	2,3-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	3033-77-0	CMR
118	1,2,5,6,9,10-Hexabromocyclodecane	3194-55-6	CMR, PBT
119	3-isocyanatomethyl-3,5,5-trimethylcyclohexyl isocyanate	4098-71-9	STOT
120	α,α -Bis[4-(dimethylamino)phenyl]-4-(phenylamino)-1-naphthalenemethanol	6786-83-0	CMR
121	Mercury(Inorganic metal)	7439-97-6	CMR, PBT, STOT
122	Arsenic(Inorganic metal)	7440-38-2	CMR
123	Cadmium(Inorganic metal)	7440-43-9	CMR, PBT, STOT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24	Cobalt metal with Tungsten carbide	7440-48-4 & 12070-12-1	CMR
125	sodium peroxometaborate	7632-04-4	CMR
126	cobalt dichloride	7646-79-9	CMR
127	sulphuric acid	7664-93-9	CMR
128	chromic acid	7738-94-5	CMR
129	Lead dichloride	7758-95-4	CMR
130	lead chromate	7758-97-6	CMR
131	Sodium chromate	7775-11-3	CMR, STOT
132	potassium dichromat	7778-50-9	CMR, STOT
133	Arsenic hydride	7784-42-1	CMR
134	Sodium dioxarsenate	7784-46-5	CMR
135	nickel sulphat	7786-81-4	CMR, STOT
136	potassium chromate	7789-00-6	CMR
137	strontium chromate	7789-06-2	CMR
138	ammonium dichromate	7789-09-5	CMR, STOT
139	Chromic acid (H2Cr2O7), sodium salt, hydrate (1:2:2)	7789-12-0	CMR, STOT
140	Hydrazine hydrate	7803-57-8	CMR
141	Creosote	8001-58-9	CMR
142	C.I. pigment yellow 035	8048-07-5	CMR
143	phosphoryl trichloride	10025-87-3	STOT
144	Boric acid	10043-35-3	CMR
145	lead dinitrate	10099-74-8	CMR
146	Lead diiodide (PbI2)	10101-63-0	CMR
147	Arsenic acid copper salt	10103-61-4	CMR
148	Cadmium sulfate	10124-36-4	CMR, STOT
149	cobalt sulphate	10124-43-3	CMR
150	cobalt dinitrate	10141-05-6	CMR
151	Lead molybdate (PbMoO4)	10190-55-3	CMR
152	Barium chromate	10294-40-3	CMR
153	cadmium dioleate	10468-30-1	CMR
154	Sodium dichromate	10588-01-9	CMR STOT
155	Nickel oxide	11099-02-8	CMR STOT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56	potassium hydroxyoctaoxodizincatedichromate(1-)	11103-86-9	CMR
157	Boric acid	11113-50-1	CMR
158	Lead silicochromate	11113-70-5	CMR
159	Nickel sulfide	11113-75-0	CMR, STOT
160	Chromium oxide	11118-57-3	CMR
161	Perboric acid, sodium salt	11138-47-9	CMR
162	pentalead tetraoxide sulphate	12065-90-6	CMR
163	trilead dioxide phosphonate	12141-20-7	CMR
164	Boron sodium oxide (B4Na2O7), pentahydrate	12179-04-3	CMR
165	tetralead trioxide sulphate	12202-17-4	CMR
166	cadmium zinc sulphide	12442-27-2	CMR
167	lead chromate molybdate sulfate red	12656-85-8	CMR
168	Magnesium chromate	13423-61-5	CMR
169	Zinc chromate	13530-65-9	CMR
170	Calcium chromate	13765-19-0	CMR
171	Lead bis(tetrafluoroborate)	13814-96-5	CMR
172	Calcium dichromate	14307-33-6	CMR, STOT
173	Tetrafluoroborate(1-), cadmium (2:1)	14486-19-2	CMR
174	Quartz (SiO2) ※ 석영 또는 크리스토파발라이트 형태의 결정질로서 Silica dust에 한함	14808-60-7	CMR
175	2-ethylhexyl 10-ethyl-4,4-dioctyl-7-oxo-8-oxa-3,5-dithia-4-stannatetradecanoate	15571-58-1	CMR
176	2-Ethylhexanoic acid, lead salt; Hexanoic acid, 2-ethyl-, lead salt	16996-40-0	CMR
177	Lead methane sulfonate	17570-76-2	CMR
178	hexahydro-4-methylphthalic anhydride	19438-60-9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179	3,3'-dimethoxybiphenyl-4,4'-ylenediammonium dichloride	20325-40-0	CMR
180	Chromic acid (H2CrO4), chromium(3+) salt (3:2)	24613-89-6	CMR
181	trixyllyl phosphate	25155-23-1	CMR
182	Formaldehyde polymer with benzenamine	25214-70-4	CMR
183	hexahydromethylphthalic anhydride	25550-51-0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184	Hexabromocyclododecane	25637-99-4	CMR, PBT
185	Guanidine, N,N"-1,6-hexanedylbis[N'-cyano-, polymer with 1,6-hexanediamine, hydrochloride	27083-27-8	STOT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86	Neodecanoic acid, lead salt	27253-28-7	CMR
187	Paraformaldehyde	30525-89-4	CMR
188	Lead bis(dipentylthiocarbamate)	36501-84-5	CMR
189	C.I. Pigment Yellow 36	37300-23-5	CMR
190	pentazinc chromate octahydroxide	49663-84-5	CMR
191	(R)-1-chloro-2,3-epoxypropane	51594-55-9	CMR
192	Sulfuric acid lead salt, tetrabasic	52732-72-6	CMR
193	dioxobis(stearate)dilead	56189-09-4	CMR
194	1,3,5-tris[(2S and 2R)-2,3-epoxyprop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9653-74-6	CMR
195	Fatty acids, tall-oil, lead salts	61788-54-3	CMR
196	Naphthenic acids, lead salts	61790-14-5	CMR
197	Asphalt, oxidized	64742-93-4	CMR
198	(s)-1-chloro-2,3-epoxypropane	67843-74-7	CMR
199	Fatty acids, (C=12-18), lead salts	68131-60-2	CMR
200	Lead oxide (PbO), lead-contg.	68411-78-9	CMR
201	1,2-Benzenedicarboxylic acid, mixed decyl and hexyl and octyl diesters	68648-93-1	CMR
202	2-Aminoethanol reaction products with ammonia by-products from	68910-05-4	CMR
203	Methanesulfonic acid, lead salt	95860-12-1	CMR
204	C.I. pigment green 13	148092-61-9	CMR

- (1) CMR(Carcinogenic/Mutagenic/Reproductive toxicity)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 (2) EDCs(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 내분비계장애물질
- (3)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 (4) STOT(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특정표적장기독성
- (5) EU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EU REACH 규정에 따른 고위험성우려물질

[별표2]

중점관리물질(제2조 관련) ('21.7.1시행)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	4,5,6,7,7-Pentamethyloctan-3-ol	52-24-4	CMR
2	dibenz[a,h]anthracene	53-70-3	CMR
3	N-Nitrosodiethylamine	55-18-5	CMR
4	Phenylmercury nitrate	55-68-5	STOT
5	Busulfan; 1,4-Butanediol dimethanesulfonate; Myleran	55-98-1	CMR
6	Bis(tributyltin) oxide (TBTO)	56-35-9	STOT, PBT
7	Benz[a]anthracene	56-55-3	CMR, PBT
8	[R-(R*,R*)]-2,2-Dichloro-N-[2-hydroxy-1-(hydroxymethyl)-2-(4-nitrophenyl)ethyl]acetamide; Chloramphenicol, D-Chloramphenicol	56-75-7	CMR
9	p-Aminoazobenzene	60-09-3	CMR
10	N-(4-Ethoxyphenyl)acetamide; N-Acetyl-4-ethoxyaniline, p-Acetophenetidide, p-Ethoxyacetanilide, Acetophenetidin, Phenacetin	62-44-2	CMR
11	Dimethylnitrosoamine; n-Nitrosodimethylamine	62-75-9	CMR, STOT
12	Methyl Methanesulfonate	66-27-3	CMR
13	Cycloheximide	66-81-9	CMR
14	1-methyl-3-nitro-1-nitrosoguanidine	70-25-7	CMR
15	Vinyl Fluoride	75-02-5	CMR
16	fentin hydroxide (ISO); triphenyltin hydroxide	76-87-9	STOT
17	N-methylacetamide	79-16-3	CMR
18	Dimethylcarbamoyl chloride	79-44-7	CMR
19	Warfarin	81-81-2	CMR, STOT
20	Diphacinone	82-66-6	STOT
21	pindone (ISO); 2-pivaloylindan-1,3-dione	83-26-1	STOT
22	diquat dibromide	85-00-7	STOT
23	Hexachlorobutadiene, HCBD	87-68-3	PBT
24	4-chloro-o-toluidine	95-69-2	CMR
25	4-methyl-m-phenylenediamine (toluene-2,4-diamine)	95-80-7	CMR
26	(Epoxithyl)benzene	96-09-3	CMR
27	2,3-Dibromo-1-propanol	96-13-9	CMR
28	1,2,3-Trichloropropane	96-18-4	CMR
29	o-aminoazotoluene	97-56-3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30	alpha.alpha-dichlorotoluene; benzylidene chloride; benzal chloride	98-87-3	CMR
31	phenylmercury hydroxide	100-57-2	STOT
32	N,N,N',N'-tetramethyl-4,4'-methylenedianiline (Michler's base)	101-61-1	CMR
33	Furan	110-00-9	CMR, PBT
34	Coumafuryl	117-52-2	STOT
35	Bis(2-methoxyethyl) phthalate	117-82-8	CMR
36	hexachlorobenzene	118-74-1	CMR, STOT, PBT
37	Malathion	121-75-5	CMR
38	2-Methoxyethylmercury chloride	123-88-6	STOT
39	Methylarsonic acid; Methanearsonic acid, DSMA	124-58-3	CMR
40	Dipentyl phthalate (DPP)	131-18-0	CMR
41	Aniline chloride; Benzenamine, hydrochloride	142-04-1	STOT
42	perchloropentacyclo[5.3.0.02,6.03,9.04,8]decan-5-one; decachloropentacyclo[5.2.1.02,6.03,9.05,8]decan-4-one	143-50-0	CMR, PBT
43	disodium methylarsenate	144-21-8	CMR
44	Ethyleneimine	151-56-4	CMR
45	Bis(chloroethyl) Nitrosoarea	154-93-8	CMR
46	Dibenzo[a,l]pyrene	191-30-0	CMR
47	Chrysene	218-01-9	CMR, PBT
48	Dibenzo[a,j]acridine	224-42-0	CMR
49	9-Methoxy-7H-furo[3,2-g][1]benzopyran-7-one; 9-Methoxyfuro[3,2-g]chromen-7-one, 6-Hydroxy-7-methoxy-5-benzofuranacrylic acid δ-lactone, Methoxsalen	298-81-7	CMR
50	Perfluorooctane-1-sulfonyl fluoride	307-35-7	PBT
51	Aristolochic acid	313-67-7	CMR
52	Azacididine	320-67-2	CMR
53	Nonadecafluorodecanoic acid	335-76-2	CMR, PBT
54	Procarbazine and Its Hydrochloride	366-70-1	CMR
55	Perfluorononan-1-oic acid	375-95-1	CMR, STOT, PBT
56	6-[(1-Methyl-4-nitro-1H-imidazol-5-yl)thio]-1H-purine; Azathioprine, 6-(1-Methyl-4-nitro-5-imidazolyl)thiopurine	446-86-6	CMR
57	5-Methoxypsoralen	484-20-8	CMR
58	Binapacryl	485-31-4	CMR
59	Chlornaphazine	494-03-1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60	Mustard gas	505-60-2	CMR
61	Tetraphenylarsonium chloride	507-28-8	CMR
62	Cadmium carbonate	513-78-0	CMR, STOT
63	1,2-dimethylhydrazine	540-73-8	CMR
64	Arsonous dichloride, (2-chloroethenyl)-	541-25-3	CMR
65	Cadmium cyanide	542-83-6	CMR
66	Cadmium acetate	543-90-8	CMR
67	Lead tetraacetate	546-67-8	CMR
68	Nickel dicyanide	557-19-7	CMR, STOT
69	4,4'-bis(dimethylamino)-4''-(methylamino)trityl alcohol	561-41-1	CMR
70	Disodium 3,3'-[[1,1'-biphenyl]-4,4'-diylbis(azo)]bis(4-aminonaphthalene-1-sulphonate) (C.I. Direct Red 28)	573-58-0	CMR
71	Diethylcadmium	592-02-9	CMR
72	Lead dithiocyanate	592-87-0	CMR
73	Bromoethene: Vinyl bromide	593-60-2	CMR
74	Diisopentyl phthalate	605-50-5	CMR
75	Pentachlorobenzene, PeCB	608-93-5	PBT
76	1,2-diethoxyethane	629-14-1	CMR
77	o-Toluidine chloride	636-21-5	CMR
78	N-Nitroso-N-methylurea	684-93-5	CMR
79	Tributyltin hydride	688-73-3	STOT
80	N-Nitroso-N-ethylurea	759-73-9	CMR
81	4,4'-methylenedi-o-toluidine	838-88-0	CMR
82	fentin acetate (ISO); triphenyltin acetate	900-95-8	STOT
83	Tributyltin hydroxide	1067-97-6	STOT
84	N-(Phosphonomethyl)glycine: Glyphosate	1071-83-6	CMR
85	(Z)-9-Octadecenoic acid lead(2+) salt	1120-46-3	CMR
86	Diarsenic triselenide	1303-36-2	CMR
87	Cadmium telluride	1306-25-8	CMR
88	Trilead bis(carbonate) dihydroxide	1319-46-6	CMR
89	Lead acetate	1335-32-6	CMR
90	Chromium copper zinc oxide	1336-14-7	CMR
91	Lead oxide phosphonate (Pb3O2(HPO3)), hemihydrate	1344-40-7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92	Dinoterb	1420-07-1	CMR
93	2,2'-bioxirane; 1,2,3,4-diepoxybutane	1464-53-5	CMR
94	Chromic acid (H2CrO4) bis(triphenylsilyl) ester; Bis(triphenylsilyl) chromate	1624-02-8	CMR
95	2,7-(Bis(2-arsonophenylazo))-1,8-dihydroxynaphthalene-3,6-disulfonic acid	1668-00-4	CMR
96	Benz[a]anthracene-d12	1718-53-2	CMR, PBT
97	Chrysene-1,2,3,4,5,6,7,8,9,10,11,12-d12	1719-03-5	CMR, PBT
98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	1746-01-6	CMR, PBT
99	1,1,2,2,3,3,4,4,5,5,6,6,7,7,8,8-Heptadecafluoro-1-octanesulfonic acid	1763-23-1	CMR, STOT, PBT
100	pentachloroanisole	1825-21-4	PBT
101	Disodium 4-amino-3'-[[4'-[(2,4-diaminophenyl)azo][1,1'-biphenyl]-4-yl]azo]-5-hydroxy-6-(phenylazo)naphthalene-2,7-disulphonate (C.I. Direct Black 38)	1937-37-7	CMR
102	Tributyltin fluoride	1983-10-4	STOT
103	Tributyltin methacrylate	2155-70-6	STOT
104	Octadecanoic acid cadmium salt	2223-93-0	CMR
105	2,4,6-Trimethyl-2,4,6-tris(3,3,3-trifluoropropyl)cyclotrisiloxane	2374-14-3	STOT
106	dodecachloropentacyclo[5.2.1.02.6.03.9.05.8]decane: mirex	2385-85-5	CMR, PBT
107	Cadmium 2-ethylhexanoate	2420-98-6	CMR
108	Aniline sulfate (1:1)	2424-53-5	STOT
109	C.I. direct blue 006	2602-46-2	CMR
110	Cadmium dilaurate	2605-44-9	CMR
111	Potassium perfluorooctanesulfonate	2795-39-3	CMR, STOT
112	Benzoic acid cadmium salt	3026-22-0	CMR
113	Tributyltin laurate	3090-36-6	STOT
114	Ammonium nonadecafluorodecanoate	3108-42-7	CMR, PBT
115	p-tert-Butylbenzoic acid lead salt	3249-60-3	CMR
116	Trilead diarsenate	3687-31-8	CMR
117	Chlorophacinone	3691-35-8	CMR, STOT
118	pentachlorophenyl laurate	3772-94-9	PBT
119	Ammonium pentadecafluorooctanoate (APFO)	3825-26-1	CMR, STOT, PBT
120	Decanoic acid, nonadecafluoro-, sodium salt	3830-45-3	CMR, PBT
121	Tributyltin maleate	4027-18-3	STOT
122	Ammonium salts of perfluorononan-1-oic-acid	4149-60-4	CMR, STOT, PBT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23	p-tert-Butylbenzoic acid cadmium salt	4167-05-9	CMR
124	Tributyltin salicylate	4342-30-7	STOT
125	Cadmium diformate	4464-23-7	CMR
126	13-cis-Retinoic acid	4759-48-2	CMR
127	Bis(tributyltin) phthalate	4782-29-0	STOT
128	Tetrabromodiphenyl ether and pentabromodiphenyl ether	5436-43-1	PBT
129	1-Nitropyrene	5522-43-0	CMR
130	(S)-4-hydroxy-3-(3-oxo-1-phenylbutyl)-2-benzopyrone	5543-57-7	CMR, STOT
131	(R)-4-hydroxy-3-(3-oxo-1-phenylbutyl)-2-benzopyrone	5543-58-8	CMR, STOT
132	Coumatetralyl	5836-29-3	CMR, STOT
133	Lead dipicrate: Phenol, 2,4,6-trinitro-, lead(2+) salt	6477-64-1	CMR
134	Dibasic lead phthalate	6838-85-3	CMR
135	Octadecanoic acid lead salt; Stearic acid lead salt	7428-48-0	CMR
136	Thorium-232 and its decay products	7440-29-1	CMR
137	Beryllium(Inorganic metal)	7440-41-7	CMR, STOT
138	Lead sulfite (PbSO3)	7446-10-8	CMR
139	Trilead bis(orthophosphate)	7446-27-7	CMR
140	mercury dichloride: mercuric chloride	7487-94-7	STOT
141	6-Nitrochrysene	7496-02-8	CMR
142	Arsenic acid, sodium salt	7631-89-2	CMR
143	Lead tungsten tetraoxide	7759-01-5	CMR
144	Arsenic acid	7778-39-4	CMR
145	Copper arsenate (Cu3(AsO4)2)	7778-41-8	CMR
146	Disodium hydrogenarsenate	7778-43-0	CMR
147	Calcium arsenate	7778-44-1	CMR
148	Lead difluoride	7783-46-2	CMR
149	Lead(4+) fluoride	7783-59-7	CMR
150	Silver chromate	7784-01-2	CMR
151	Silver dichromate	7784-02-3	CMR, STOT
152	Trisilver arsenite	7784-08-9	CMR
153	Arsenic tribromide	7784-33-0	CMR
154	Arsenic trichloride	7784-34-1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55	Trifluoroarsine	7784-35-2	CMR
156	Pentafluoroarsorane	7784-36-3	CMR
157	Manganese hydrogen arsenate	7784-38-5	CMR
158	Potassium dihydrogen arsenate	7784-41-0	CMR
159	Diammonium hydrogen arsenate	7784-44-3	CMR
160	Arsenic triiodide	7784-45-4	CMR
161	Ammonium chromate	7788-98-9	CMR
162	Mercury dichromate	7789-10-8	CMR, STOT
163	Cadmium bromide	7789-42-6	CMR
164	Cadmium fluoride	7790-79-6	CMR, STOT
165	Cadmium iodide	7790-80-9	CMR
166	Cadmium iodate	7790-81-0	CMR
167	Cadmium wolframate	7790-85-4	CMR
168	C.I. pigment yellow 041	8012-00-8	CMR
169	Resin acids and Rosin acids, lead salts	9008-26-8	CMR
170	Nitric acid, cadmium salt, tetrahydrate	10022-68-1	CMR, STOT
171	Lead arsenite	10031-13-7	CMR
172	Lead dibromide	10031-22-8	CMR
173	Radon	10043-92-2	CMR
174	Lead(2+) silicate	10099-76-0	CMR
175	Lead divanadium hexaoxide	10099-79-3	CMR
176	Iron arsenate	10102-49-5	CMR
177	Iron bis(arsenate)	10102-50-8	CMR
178	Arsenic acid magnesium salt	10103-50-1	CMR
179	Arsenic acid calcium salt	10103-62-5	CMR
180	Cadmium chloride	10108-64-2	CMR, STOT
181	Potassium arsonate	10124-50-2	CMR
182	Copper arsonate	10290-12-7	CMR
183	Diiron tris(chromate)	10294-52-7	CMR
184	Cadmium nitrate	10325-94-7	CMR, STOT
185	Dibismuth dilead tetraruthenium tridecaoxide	11116-83-9	CMR
186	Lead chromate	11119-70-3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187	Silicic acid lead salt	11120-22-2	CMR
188	Chrysotile(Mg3H2(SiO4)2.H2O)	12001-29-5	CMR, STOT
189	Tricopper arsenide	12005-75-3	CMR
190	Dysprosium arsenide (DyAs)	12005-81-1	CMR
191	Diiron arsenide	12005-88-8	CMR
192	Gadolinium arsenide	12005-89-9	CMR
193	Holmium arsenide (HoAs)	12005-92-4	CMR
194	Lutetium arsenide (LuAs)	12005-94-6	CMR
195	Manganese arsenide	12005-95-7	CMR
196	Manganese arsenide (Mn2As)	12005-96-8	CMR
197	Terbium arsenide (TbAs)	12006-08-5	CMR
198	Thallium arsenide (TlAs)	12006-09-6	CMR
199	Ytterbium arsenide	12006-12-1	CMR
200	Tricadmium diarsenide	12006-15-4	CMR
201	Iron diarsenide	12006-21-2	CMR
202	Trizinc diarsenide	12006-40-5	CMR
203	Cadmium titanium trioxide	12014-14-1	CMR
204	Cadmium phosphide (Cd3P2)	12014-28-7	CMR
205	Dodecairon lead nonadecaoxide	12023-90-4	CMR
206	Lead disodium dioxide	12034-30-9	CMR
207	Lead diniobium hexaoxide	12034-88-7	CMR
208	nickel dioxide	12035-36-8	CMR, STOT
209	Lead tin oxide (PbSnO3)	12036-31-6	CMR
210	Lead sulfate, basic	12036-76-9	CMR
211	Iron arsenide	12044-16-5	CMR
212	Gallium arsenide phosphide (Ga2AsP)	12044-20-1	CMR
213	Tripotassium arsenide	12044-21-2	CMR
214	Trilithium arsenide	12044-22-3	CMR
215	Trisodium arsenide	12044-25-6	CMR
216	Praseodymium arsenide (PrAs)	12044-28-9	CMR
217	Cobalt arsenide (CoAs2)	12044-42-7	CMR
218	Magnesium arsenide (Mg3As2)	12044-49-4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219	Arsenic telluride (As2Te3)	12044-54-1	CMR
220	Zinc arsenide (ZnAs2)	12044-55-2	CMR
221	Bismuth compound with lead (1:1)	12048-28-1	CMR
222	Dilead oxide	12059-89-1	CMR
223	Lead titanium trioxide	12060-00-3	CMR
224	Lead zirconium trioxide	12060-01-4	CMR
225	Lead ditantalum hexaoxide	12065-68-8	CMR
226	Nickel diarsenide	12068-61-0	CMR, STOT
227	Lead disulfide	12137-74-5	CMR
228	Cadmium peroxide (Cd(O2))	12139-22-9	CMR
229	Cadmium zirconium oxide	12139-23-0	CMR
230	Cadmium chloride phosphate (Cd5Cl(PO4)3)	12185-64-7	CMR
231	Cadmium niobium oxide (Cd2Nb2O7)	12187-14-3	CMR
232	Lead chloride oxide	12205-72-0	CMR
233	Dichromium arsenide	12254-85-2	CMR
234	Erbium arsenide (ErAs)	12254-88-5	CMR
235	Lanthanum arsenide (LaAs)	12255-04-8	CMR
236	Niobium arsenide (NbAs)	12255-08-2	CMR
237	Neodymium arsenide (NdAs)	12255-09-3	CMR
238	Triantimony arsenide	12255-36-6	CMR
239	Samarium arsenide	12255-39-9	CMR
240	Yttrium arsenide	12255-48-0	CMR
241	Tribarium diarsenide	12255-50-4	CMR
242	Tricalcium diarsenide	12255-53-7	CMR
243	Cobalt arsenide (CoAs3)	12256-04-1	CMR
244	Lead hydroxide nitrate	12268-84-7	CMR
245	Germanium arsenide	12271-72-6	CMR
246	Cadmium tantalum oxide (CdTa2O6)	12292-07-8	CMR
247	Arsenic sulfide (As2S4)	12344-68-2	CMR
248	Potassium pentadecaoxidoplumbatepentaniobate(1-)	12372-45-1	CMR
249	Basic lead styphnate	12403-82-6	CMR
250	Trisilver arsenide	12417-99-1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251	Dipotassium heptadecaooxotetrazincate tetrachromate(2-)	12433-50-0	CMR
252	Lead germanate	12435-47-1	CMR
253	Dioxobis(stearato)trilead: Lead, bis(octadecanoato)dioxotri-	12578-12-0	CMR
254	Basic lead sulfite	12608-25-2	CMR
255	Lead titanium zirconium oxide	12626-81-2	CMR
256	Lead tungsten oxide	12737-98-3	CMR
257	Lead oxide sulfate	12765-51-4	CMR
258	1-(2-Chloroethyl)-3-cyclohexyl-1-nitrosourea	13010-47-4	CMR
259	cis-cyclohexane-1,2-dicarboxylic anhydride	13149-00-3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260	Lead diazide	13424-46-9	CMR
261	Dirubidium dichromate	13446-73-6	CMR, STOT
262	Diarsenic acid	13453-15-1	CMR
263	Dithallium dichromate	13453-35-5	CMR, STOT
264	Dilead pyrophosphate	13453-66-2	CMR
265	Dicesium chromate	13454-78-9	CMR
266	Chromic acid (H ₂ CrO ₄), cobalt(2+) salt (1:1)	13455-25-9	CMR
267	Ammonium dihydrogenarsenate	13462-93-6	CMR
268	Nickel carbonyl	13463-39-3	CMR
269	Potassium arsenite	13464-35-2	CMR
270	Trisodium arsenite	13464-37-4	CMR
271	Trisodium arsenate	13464-38-5	CMR
272	Zinc arsenate	13464-44-3	CMR
273	Tristrontium diarsenate	13464-68-1	CMR
274	Dithallium chromate	13473-75-1	CMR
275	Tribarium diarsenate	13477-04-8	CMR
276	Tricadmium bis(phosphate)	13477-17-3	CMR
277	Trinickel bis(arsenate)	13477-70-8	CMR, STOT
278	Trilithium arsenate	13478-14-3	CMR
279	Lead thiosulfate	13478-50-7	CMR
280	Boron arsenate	13510-31-1	CMR
281	Trisilver arsenate	13510-44-6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282	Chromic acid	13530-68-2	CMR, STOT
283	Copper chromate	13548-42-0	CMR
284	Diboron tricadmium hexaoxide: Cadmium borate	13701-66-1	CMR
285	Telluric acid (H ₂ TeO ₄), lead(2+) salt (1:1)	13845-35-7	CMR
286	Phosphoric acid, cadmium salt	13847-17-1	CMR
287	1-(2-Chloroethyl)-3-(4-methylcyclohexyl)-1-nitrosourea	13909-09-6	CMR
288	Cadmium molybdenum oxide (CdMoO ₄)	13972-68-4	CMR
289	Sulfamic acid cadmium salt (2:1)	14017-36-8	CMR
290	Zinc dichromate	14018-95-2	CMR, STOT
291	3,3',4,4'-Tetrachloroazobenzene	14047-09-7	CMR
292	trans-cyclohexane-1,2-dicarboxylic anhydride	14166-21-3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293	Lithium chromate	14307-35-8	CMR
294	Phosphoric acid, ammonium cadmium salt (1:1:1)	14520-70-8	CMR
295	Phosphorus-32, as phosphate	14596-37-3	CMR
296	Lead metaborate	14720-53-7	CMR
297	Nickel chromate	14721-18-7	CMR, STOT
298	Chromyl dichloride	14977-61-8	CMR
299	Sodium metaarsenate	15120-17-9	CMR
300	Sodium perborate	15120-21-5	CMR
301	Lead styphnate	15245-44-0	CMR
302	Lead acetate	15347-57-6	CMR
303	Nickel dichromate	15586-38-6	CMR, STOT
304	Diphosphoric acid cadmium salt (1:2)	15600-62-1	CMR
305	Triethyl arsenate	15606-95-8	CMR
306	Lead octoate	15696-43-2	CMR
307	Phosphoric acid, lead(2+) salt (1:1)	15845-52-0	CMR
308	Telluric acid (H ₂ TeO ₃), cadmium salt (1:1)	15851-44-2	CMR
309	Telluric acid (H ₂ TeO ₃), lead(2+) salt (1:1)	15851-47-5	CMR
310	Telluric acid (H ₂ TeO ₄), cadmium salt (1:1)	15852-14-9	CMR
311	Benzoic acid lead salt	15907-04-7	CMR
312	Potassium chlorotrioxochromate	16037-50-6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313	Lead phosphite	16038-76-9	CMR
314	C.I. direct brown 095	16071-86-6	CMR
315	N-Nitrosonornicotine	16543-55-8	CMR
316	Nickel subsulfide	16812-54-7	CMR, STOT
317	Potassium hexafluoroarsenate	17029-22-0	CMR
318	Lead chromate oxide (Pb2(CrO4)O)	18454-12-1	CMR
319	Nickel(2+) hydrogen citrate	18721-51-2	CMR, STOT
320	Lead bis(dimethyldithiocarbamate): Lead, bis(dimethylcarbamodithioato-κS,κS'-), (T-4)-	19010-66-3	CMR
321	Lead hydroxide (Pb(OH)2)	19783-14-3	CMR
322	Chromic acid (H2Cr2O7) compd. with pyridine (1:2)	20039-37-6	CMR, STOT
323	Lead cyanamidate	20837-86-9	CMR
324	Lead cyanamidate	20890-10-2	CMR
325	Cadmium hydroxide	21041-95-2	CMR, STOT
326	Sodium salts of perfluorononan-1-oi-c-acid	21049-39-8	CMR, STOT, PBT
327	o-Toluidine dihydrochloride	22006-17-3	CMR
328	Indium phosphide (InP)	22398-80-7	CMR, STOT
329	Lead silicate	22569-74-0	CMR
330	Tricobalt diarsenate	24719-19-5	CMR
331	Lead diiodate	25659-31-8	CMR
332	Lead sulfite	25666-92-6	CMR
333	Toluidine	26915-12-8	CMR
334	Cobalt arsenide (CoAs)	27016-73-5	CMR
335	Nickel arsenide	27016-75-7	CMR, STOT
336	Cyclopenta[cd]pyrene	27208-37-3	CMR
337	Manganese arsenate	27526-45-0	CMR
338	Sodium pentachloropentate monohydrate	27735-64-4	PBT
339	Tributyltin phosphate	28089-34-1	STOT
340	Hexafluoroarsenate(1-) lithium	29935-35-1	CMR
341	Cadmium sulphate	31119-53-6	CMR, STOT
342	Bis(tributyltin) meso-2,3-dibromosuccinate	31732-71-5	STOT
343	polyhexamethylene biguanide hydrochloride	32289-58-0	STOT
344	Europium arsenide (EuAs)	32775-46-5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345	Dichromic acid sodium salt	34493-01-1	CMR, STOT
346	Lead cyanamide	35112-70-0	CMR
347	Orthoboric acid lead(2+) salt	35498-15-8	CMR
348	Hexabromodiphenyl ether	36483-60-0	PBT
349	Lead ruthenium oxide (PbRuO3)	37194-88-0	CMR
350	Strontium arsenide (Sr3As2)	39297-24-0	CMR
351	Dinocap	39300-45-3	CMR
352	Lead chloride silicate	39390-00-6	CMR
353	Tetrabromodiphenyl ether	40088-47-9	PBT
354	Chromic acid, potassium zinc salt; Potassium zinc chromate	41189-36-0	CMR
355	Sulfuric acid barium lead salt	42579-89-5	CMR
356	Hexahydro-1-methylphthalic anhydride	48122-14-1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357	Boric acid cadmium salt	51222-60-7	CMR
358	Acetic acid, lead salt, basic	51404-69-4	CMR
359	C.I. pigment red 090	51868-24-7	CMR
360	Octadecanoic acid, lead(2+) salt, tribasic; Tribasic lead stearate	52080-60-1	CMR
361	Sulfurous acid, lead salt, basic	52231-92-2	CMR
362	Chlorozotocin	54749-90-5	CMR
363	3-(3-biphenyl-4-yl-1,2,3,4-tetrahydro-1-naphthyl)-4-hydroxycoumarin	56073-07-5	CMR, STOT
364	Brodifacoum	56073-10-0	CMR, STOT
365	Zinc arsenide	56450-43-2	CMR
366	Polyhexamethyleneguanidine hydrochloride; PHMG chloride	57028-96-3	STOT
367	Hexahydro-3-methylphthalic anhydride	57110-29-9	기타(EU SVHC 호흡기과민성)
368	2,3,4,7,8-Pentachlorodibenzofuran	57117-31-4	CMR
369	3,4,5,3',4'-Pentachlorobiphenyl	57465-28-8	CMR
370	1,2,4-Tribromo-5-(2,4-dibromophenoxy)benzene	60348-60-9	PBT
371	Zirconium arsenide (ZrAs)	60909-47-9	CMR
372	Fatty acids, tall oil, lead manganese salts	61788-53-2	CMR
373	Naphthenic acids cadmium salts	61789-34-2	CMR
374	Neodecanoic acid cadmium salt ; Cadmium neodecanoate	61951-96-0	CMR
375	Sulfurous acid, lead salt, dibasic	62229-08-7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376	4-(N-Nitrosomethylamino)-1-(3-pyridyl)-1-butanone	64091-91-4	CMR
377	Lead silicate sulfate (Pb2(SiO3)(SO4))	67711-86-8	CMR
378	Fatty acids, (C=10-18), cadmium salts	68131-58-8	CMR
379	Fatty acids, (C=12-18), cadmium salts	68131-59-9	CMR
380	Linseed oil, reaction products with lead oxide (Pb3O4) and mastic	68152-99-8	CMR
381	2-Propenoic acid, 2-methyl-, methyl ester, polymer with ethenylbenzene, lead(2+) bis(2-methyl-2-propenoate) and α -(2-methyl-1-oxo-2-propenyl)- ω -[(2-methyl-1-oxo-2-propenyl)oxy]poly(oxy-1,2-ethanediyl); Methyl methacrylate-styrene-polyethylene glycol-dimethacrylic acid-methacrylic acid lead salt copolymer	68155-47-5	CMR
382	Shale oils	68308-34-9	CMR
383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lead-doped	68332-81-0	CMR
384	Fatty acids, (C=8-10)-branched, lead salts, basic	68409-79-0	CMR
385	Fatty acids, (C=14-18), cadmium salts	68409-82-5	CMR
386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chloride-doped	68512-49-2	CMR
387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pper and manganese-doped	68512-50-5	CMR
388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pper-doped	68512-51-6	CMR
389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hexyl ester, branched and linear	68515-50-4	CMR
390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10)-alkyl esters	68515-51-5	CMR
391	Linseed oil, lead manganese salt	68553-17-3	CMR
392	Spinels, boron calcium lead silicon white	68555-05-5	CMR
393	Spinels, lead silicon tin zinc white	68555-07-7	CMR
394	Zinc sulfide (ZnS), copper and lead-doped	68585-90-0	CMR
395	Fatty acids, (C=6-19)-branched, lead salts, basic	68603-83-8	CMR
396	Carboxylic acids, tall oil, lead salts, basic	68603-93-0	CMR
397	Castor oil, dehydrated polymer with rosin, calcium lead zinc salt	68604-05-7	CMR
398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lead salts	68605-98-1	CMR
399	1,2,4-Tribromo-5-(2,4,5-tribromophenoxy)benzene	68631-49-2	PBT
400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aluminum and cobalt and copper and silver-doped	68784-10-1	CMR
401	Barium cadmium calcium chloride fluoride phosphate, antimony and manganese-doped	68784-55-4	CMR
402	Boric acid (H6B4O9) cadmium salt (1:3), manganese-doped	68784-58-7	CMR
403	Calcium, acetate coco fatty acids decanoate hydrogenated tallow fatty acids octanoate lead complex	68784-59-8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404	Silicic acid (H2Si2O5), barium salt (1:1), lead-doped	68784-75-8	CMR
405	Silicic acid (H4SiO4) magnesium manganese (2+) zinc salt, arsenic and lead-doped	68784-76-9	CMR
406	Fatty acids, tall oil, cadmium salts	68855-80-1	CMR
407	C.I. pigment yellow 037	68859-25-6	CMR
408	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	CMR
409	Barium cadmium sulfide (Ba2CdS3), solid soln. with barium zinc sulfide (Ba2ZnS3), manganese-doped	68876-90-4	CMR
410	Cadmium sulfide (CdS), aluminum and copper-doped	68876-98-2	CMR
411	Cadmium sulfide (CdS), aluminum and silver-doped	68876-99-3	CMR
412	Cadmium sulfide (CdS), copper chloride-doped	68877-00-9	CMR
413	Cadmium sulfide (CdS), silver chloride-doped	68877-01-0	CMR
414	Cadmium sulfide (CdS), copper and lead-doped	68891-87-2	CMR
415	heptabromodiphenyl ether	68928-80-3	PBT
416	Resin acids and Rosin acids, calcium lead salts	68952-91-0	CMR
417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cadmium salts	68953-39-9	CMR
418	Cadmium, laurate palmitate stearate complexes	68954-18-7	CMR
419	Resin acids and Rosin acids, cadmium salts	68956-81-0	CMR
420	Barium bismuth lead niobium titanium oxide	68987-33-7	CMR
421	Linseed oil polymer with tung oil, lead salt	68990-75-0	CMR
422	[Phthalato(2-)]dioxotrilead	69011-06-9	CMR
423	Lead chromate silicate (Pb3(CrO4)(SiO4))	69011-07-0	CMR
424	Cadmium, dross	69011-69-4	CMR
425	Cadmium, sponge	69011-70-7	CMR
426	Lead, dross	69029-52-3	CMR
427	Calcines, cadmium residue	69029-63-6	CMR
428	Lead ores, sintered	69029-74-9	CMR
429	Fatty acids, tallow, hydrogenated, mixed with acetic acid, coconut oil, decanoic acid and octanoic acid, calcium lead salts	69103-04-4	CMR
430	Fatty acids, (C=12-18), barium cadmium salts	70084-75-2	CMR
431	Silver arsenide (Ag2As)	70333-07-2	CMR
432	Chlorinated naphthalenes, PCN	70776-03-3	PBT
433	Fatty acids, (C=18)-unsatd., dimers polymers with dehydrated castor oil fatty acids and glycerol, lead salts	70879-91-3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434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C6-8-branched alkyl esters, C7-rich	71888-89-6	CMR
435	Arsenous acid lithium salt	72845-34-2	CMR
436	Cadmium sulfide (CdS), solid soln. with zinc sulfide, cobalt and copper-doped	72869-26-2	CMR
437	Fatty acids, coco, cadmium salts	72869-63-7	CMR
438	2-Amino-3-ethylimidazo[4,5-f]quinoline	76180-96-6	CMR
439	1,2-Benzenedicarboxylic acid, dipentyl ester, branched and linear	84777-06-0	CMR
440	Polyhexamethyleneguanidine phosphate: PHMG phosphate	89697-78-9	STOT
441	Flocoumafen	90035-08-8	CMR, STOT
442	Cadmium zinc lithopone yellow	90604-89-0	CMR
443	Cadmium lithopone yellow	90604-90-3	CMR
444	Fatty acids, C16-18, lead salts	91031-62-8	CMR
445	Cadmium bis(o-nonylphenylate)	93894-07-6	CMR
446	Calcines, lead-zinc ore conc.	94551-62-9	CMR
447	Gallium zinc triarsenide	98106-56-0	CMR
448	Vanadium(4+) diarsenate (1:1)	99035-51-5	CMR
449	Sulfuric acid barium salt (1:1), lead-doped	99328-54-8	CMR
450	Barium tetrachlorocadmate(2-)	99587-10-7	CMR
451	Cadmium chloride phosphate (Cd5Cl(PO4)3), manganese-doped	100402-53-7	CMR
452	Lead, dross, vanadium-zinc-contg.	100656-49-3	CMR
453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and titanium oxide (TiO2), praseodymium-doped	101356-99-4	CMR
454	Arsenic acid (H3AsO4), magnesium salt, manganese-doped	102110-21-4	CMR
455	Barium oxide (BaO), solid soln. with calcium oxide, strontium oxide and tungsten oxide (WO3), lead-doped	102110-24-7	CMR
456	Boric acid (H3BO3), solid soln. with barium oxide, calcium oxide and strontium oxide, lead and manganese-doped	102110-26-9	CMR
457	Cadmium oxide (CdO), solid soln. with magnesium oxide, tungsten oxide (WO3) and zinc oxide	102110-30-5	CMR
458	Silicic acid-calcium salt, lead and manganese-doped	102110-36-1	CMR
459	Slimes and Sludges, copper-lead ore roasting off gas scrubbing, arsenic-contg.	102110-62-3	CMR
460	Silicic acid zirconium salt, cadmium pigment-encapsulated	102184-95-2	CMR
461	Fluquinconazole	136426-54-5	STOT
462	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CMR

순번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CAS No.)	비고
463	1,3,5-Tribromo-2-(2,4,5-tribromophenoxy)benzene	207122-15-4	PBT
464	1,2,3,5-Tetrabromo-4-(2,4,5-tribromophenoxy)benzene	207122-16-5	PBT
465	2,2'-[1,2-Ethanediy]bis(oxyl)bisethanamine polymer with guanidine monohydrochloride	374572-91-5	STOT
466	1,3-Benzenedimethanamine, N-(2-phenylethyl) derivs.	404362-22-7	STOT
467	1,2,3,5-Tetrabromo-4-(2,3,5-tribromophenoxy)benzene	446255-22-7	PBT
468	N-pentyl-isopentylphthalate	776297-69-9	CMR

- (1) CMR(Carcinogenic/Mutagenic/Reproductive toxicity) :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2) EDCs(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 내분비계장애물질
 (3) PBT(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substances) :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4) STOT(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 특정표적장기독성
 (5) EU SVHC(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 EU REACH 규정에 따른 고위험성우려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4호, 2018. 12. 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별표 1에서 정한 화학물질
2. 포도당, 녹말 등 별표 2에서 정한 화학물질

부칙 <제2018-234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불순물(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2. 부산물(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
3.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등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광물, 광석, 정광, 천연가스, 원유, 석탄
나. 유리, 세라믹 프릿(ceramic frits)
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응축액
라. 공정가스 및 그 구성성분
마. 코크, 시멘트 클링커, 산화 마그네슘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이외의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 또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력, 기계 또는 증력을 이용하거나 물에 용해, 부유, 열을 이용한 수분 제거로 얻는 물질
4. 천연 자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음 각 목의 물질로 화학적인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가. 식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식물성 왁스
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기름, 동물성 왁스
다. C₆부터 C₂₄까지의 지방산과 그 칼륨, 나트륨, 칼슘 또는 마그네슘 염류
라. 글리세롤
5. 아미노산 및 그 염류, 당류(糖類)
6. DNA 또는 RNA를 구성하는 염기(nucleobase), 염기와 당(糖)이 결합한 뉴클레오사이드(nucleoside), 염기, 당과 인산이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nucleotide)
7. 퇴비 및 바이오연료(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바이오가스 등)
8. 수소 및 산소
비고 : 별표 1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별표2]

연번	CAS번호	화학물질명
1	50-70-4	D-글루시톨(D-glucitol C6H14O6)
2	50-81-7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C6H8O6)
3	50-99-7	포도당(Glucose C6H12O6)
4	57-48-7	과당(Fructose C6H12O6)
5	56-87-1	L-리신(L-lysine C6H14N2O2)
6	57-50-1	순수 자당(Sucrose, pure C12H22O11)
7	58-95-7	α -토코페릴 아세테이트(α -tocopheryl acetate C31H52O3)
8	59-23-4	갈락토오스(Galactose C6H12O6)
9	59-51-8	DL-메티오닌(DL-methionine C5H11NO2S)
10	63-42-3	유당(Lactose C12H22O11)
11	69-65-8	D-만나당(D-mannitol C6H14O6)
12	87-79-6	L-소르보스(L-sorbose C6H12O6)
13	123-94-4	순수 글리세롤 스테아레이트(Glycerol stearate, pure C21H42O4)
14	124-38-9	이산화탄소(Carbon dioxide CO2)
15	137-08-6	D-형 판토텐산칼슘(Calcium pantothenate, D-form C9H17NO5/2Ca)
16	150-30-1	DL-페닐알라닌(DL-phenylalanine C9H11NO2)
17	527-07-1	글루콘산나트륨(Sodium gluconate C6H12O7Na)
18	1338-43-8	솔비탄 올레이트(Sorbitan oleate C24H44O6)
19	7439-90-9	크립톤(Krypton Kr)
20	7440-01-9	네온(Neon Ne)
21	7440-37-1	아르곤(Argon Ar)
22	7440-59-7	헬륨(Helium He)
23	7440-63-3	제논(Xenon Xe)
24	7727-37-9	질소(Nitrogen N2)
25	7732-18-5	물(Water H2O)
26	8002-43-5	레시틴(Lecithins) - 인산의 콜린 에스테르와 연결된 지방산들의 디글리세라이드들의 복합구성
27	8029-43-4	시럽, 가수분해 당백질(Syrups, hydrolyzed starch) - 산 또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 옥수수녹말의 가수분해에 의해 얻어진 복합구성. 주로 d-포도당, 맥아당과 말토덱스트린으로 구성

28	8030-12-4	수첨우지(Tallow, hydrogenated)
29	9004-53-9	호정(Dextrin)
30	9005-25-8	녹말(Starch) - 옥수수, 밀 및 사탕수수 같은 곡물남알, 감자와 타피오카 같은 뿌리와 줄기로부터 통상적으로 유도되는 고중합 탄수화물 물질
31	9050-36-6	말토덱스트린(Maltodextrin)
32	14906-97-9	D-글루콘산염 나트륨(Sodium D-gluconate C6H12O7xNa)
33	26836-47-5	솔비톨 모노스테아레이트(D-glucitol monostearate C24H48O7)
34	61788-59-8	지방산, 코코넛, 메틸 에스테르(Fatty acids, coco, Me esters)
35	65996-61-4	셀룰로오스 펄프(Cellulose pulp)
36	67701-30-8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Glycerides, C16-18 and C18-unsaturated.)
37	68131-37-3	시럽, 옥수수(Syrups, corn, dehydrated)
38	68308-54-3	글리세리드, 단일, 이중 및 삼중 수소화 지지(Glycerides, tallow mono-, di- and tri-, hydrogenated)
39	68424-61-3	글리세리드, C16-18 및 불포화-C18단일 및 이중(Glycerides, C16-18 and C18-unsaturated, mono- and di-)
40	85665-33-4	글리세리드(Glycerides, C10-18)
41	16291-96-6	Charcoal
42	68647-86-9	Charcoal, coconut shell
43	64365-11-3	Activated charcoal(「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44	7440-44-0	Carbon; Activated carbon(「먹는물관리법」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에 한함)

비고 : 별표 2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수화물도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에 포함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시행 2019. 1. 1.] [환경부고시 제2018-235호, 2018. 12.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제2호 나목에 따라 종전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 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고분자화합물질) 법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을 말한다.

1.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퍼센트 이상인 고분자화합물질
2.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분자량이 1천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25퍼센트 이상이거나, 분자량이 500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중량비 10퍼센트 이상인 고분자 화합물질
3.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질(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은 제외한다)
4.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또는 중점관리물질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질

부칙 <제2018-235호,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